

# e편한세상 부천 어반스퀘어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32-323-1649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 여부
민영	경기도 부천시 거주자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1년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6.04.23.(목)	2026.05.04.(월)	2026.05.06.(수)	2026.05.07.(목)	2026.05.13.(수)	2026.05.14.(목) ~ 2026.05.20.(수)	2026.05.26.(화) ~ 2026.05.29.(금)

##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 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 (12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 / 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 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elife.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각 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은(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단, 일부 은행에 한하여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종합저축으로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사항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청약자격 및 순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행위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및 그 외 지역 모두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10년 간 청약이 금지되며 입주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시 사업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행위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 변경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4.23.(목)입니다. (청약자격조건 기한,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부천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부천시)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05.04.(월)	2026.05.06.(수)	2026.05.07.(목)	2026.05.13.(수)	2026.05.14.(목) ~ 2026.05.20.(수)	2026.05.26.(화) ~ 2026.05.29.(금)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사업주체 주택전시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전시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49</li> </ul>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 (주택전시관 또는 은행 창구 접수 불가)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투기과열지역, 비청약과열지구인 경기도 부천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05.13.(수))로부터 적용되며 그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	

※ 본 주택은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별표3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당 사업지가 위치한 경기도 부천시는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058호(2025.08.21.)]에 따라 외국인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거지역 토지면적(대지지분)이 6㎡ 초과 시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경우 본 아파트의 전 주택형은 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내용은 추후 정부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 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부천시 주거정비과 - 4879호(2026.04.2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 일대(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 지상 38층, 2개 단지, 13개 동, 총 1,649세대[조합원물량 620세대(보류지 10세대 포함), 임대 132세대 포함] 중 일반분양 897세대 [특별공급 495세대(기관추천 90세대, 다자녀가구 90세대, 신혼부부 207세대, 노부모부양 27세대, 생애최초 81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1단지(3-1BL) - 공동주택 지하 3층 ~ 지상 38층, 7개동, 총 997세대[조합원물량 357세대(보류지 6세대 포함), 임대 132세대 포함] 중 일반분양 50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2단지(3-2,3-3BL) - 공동주택 지하 3층 ~ 지상 38층, 6개동, 총 652세대[조합원물량 263세대(보류지 4세대 포함)] 중 일반분양 38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판매시설

■ 입주시기 : 2029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타입)	단지 구분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6000152	01	059.9000A	59A	1,2단지	59.9000	21.5763	81.4763	43.7695	125.2458	28.33	374	37	37	86	11	34	205	169	14
		02	059.7700B	59B	1,2단지	59.7700	22.3611	82.1311	43.6746	125.8057	28.56	107	11	11	25	3	10	60	47	4
		03	074.6300A	74A	1,2단지	74.6300	25.8916	100.5216	54.5330	155.0546	34.95	208	21	21	48	7	19	116	92	8
		04	074.3000B	74B	1,2단지	74.3000	26.6223	100.9223	54.2918	155.2141	35.09	108	11	11	25	3	10	60	48	4
		05	084.3400A	84A	1,2단지	84.3400	29.6187	113.9587	61.6282	175.5869	39.62	73	7	7	17	2	6	39	34	13
		06	084.6000B	84B	1단지	84.6000	29.5690	114.1690	61.8181	175.9871	39.70	27	3	3	6	1	2	15	12	5
<b>합계</b>												897	90	90	207	27	81	495	402	48

※ 해당 분양은 하나의 사업으로 인·허가를 득하였으며, 아파트 분양 및 계약 시에는 3-1BL은 1단지, 3-2BL, 3-3BL은 2단지로 표기하였습니다.

※ 본 아파트는 총 2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첨자 동·호수는 단지 구분 없이 무작위로 배정됩니다. 각 단지의 주변 환경은 홈페이지 또는 주택전시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주택의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최하층이라 함은 각 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상지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인해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과의 합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지면적 중 대지지분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습니다.

※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분양면적은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

※ 공동주택의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벽체, 주동출입구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생활지원센터) 등 부대복리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을 포함한 면적입니다.

※ 공동주택의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주동 타입별로 공유하는 단위세대 주거공용면적끼리 묶어, 타입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재분배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동주택의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의 분양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기타공용면적 및 주차장 등 포함)을 합한 면적입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의 벽체공용면적은 전체공용면적에 산입하였으며, 각 호별 공용면적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지지분 및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등의 산정기준은 1,2단지 통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의 대지지분은 연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 하였으며, 공동주택의 각 단위세대 별 대지지분은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의 각 호별 대지지분은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이며,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조망권별 등 다양한 조건을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세대벽체면적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세대별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공급금액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하며 이에 대해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인지세 및 그 외 제세공과금(인지세 제외)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유상 옵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 및 판매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및 유상옵션 대금(중도금 및 잔금) 납부 시 은행 전산망 장애 등으로 오류가 발생하여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료가 산정될 수 있으므로 납부일 은행 업무 시간 내 납부를 권장합니다.
-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고,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기준 공정 시점 이후 중도금 납입일자는 예정 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중 일부는 사업주체가 대출기관을 알선한 경우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 취급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15일 이내에 납부해야하며, 15일 이후에는 미납한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대출 부적격 사유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 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산 검색 결과 당첨 사실, 이종 당첨 및 주택 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 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 지역은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주민등록표 등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으로 합니다.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 가능 및 계약체결 효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재개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동일 주택형의 아파트라도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에 대해 무상제공품목 및 마감재 등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별 라인별 최고층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동·호수 배치도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 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관 색채, 부대시설, 문주, 조경시설물 등의 계획은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5.06.27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잔금대출에 대한 LTV 및 DSR 등의 규제가 강화되어 추후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할 문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약식 표기)		59A	59B	74A	74B	84A	84B	소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등	7	2	4	2	1	1	17	
	장기복무 제대군인	2	-	1	-	-	-	3	
	10년 이상 복무군인	3	1	1	1	1	-	6	
	장애인	경기도	9	3	6	3	2	1	24
		서울특별시	7	2	4	2	1	-	16
		인천광역시	2	1	1	1	-	-	6
	중소기업 근로자	7	2	4	2	2	1	18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50%)	19	6	11	6	4	2	48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50%)	18	5	10	5	3	1	42	
신혼부부 특별공급		86	25	48	25	17	6	207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1	3	7	3	2	1	27	
생애최초 특별공급		34	10	19	10	6	2	81	
소계		205	60	116	60	39	15	495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p>‘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li> <li>-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li> <li>-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li> </ul> </div> <p>→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li> <li>-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li> <li>-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li> <li>-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li> </ul>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 · 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공급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li> <li>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 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r> <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 <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 </tr> <tr>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 <td>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li> <li>■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li> <li>■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li> </ul>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li> <li>-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ul>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li> <li>- 기관추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li>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한함)</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li>-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li>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한함)</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ul>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특별공급 유의사항**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5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 부여(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착오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부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 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 충족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90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분</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li> </ul>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li> <li>■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li> <li>■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 복지과</li> <li>■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ul>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90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li> </ul> </li> <li>■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전혼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li> <li>-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li> </ul> </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li> </ul>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시·도 거주자(부천시, 경기도 거주자) 50%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63호(2024.03.25.)]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해당시·도(부천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단, 해당시·도에서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부천시 거주자 우선)하며, 나머지 주택(우선 공급에서 미달된 주택을 포함)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기도 거주자 포함) 거주자에게 공급
  - ※ 단, 우선공급 낙첨자가 기타지역 거주자와 재경쟁시 해당지역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태아, 입양자녀, 전혼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 (태아, 입양자녀, 전혼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4-163호(2024.03.25.)]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207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li> <li>■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당첨자 선정 순서</b>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li> <li>■ <b>①소득구분</b></li> </ul>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부천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천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4.23.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533,763원	~8,802,202원	~9,326,985원	~9,906,263원	~10,485,541원	~11,064,819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9,040,516원	~10,562,642원	~11,192,382원	~11,887,516원	~12,582,649원	~13,277,783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 140%이하	7,533,764원~ 10,547,268원	8,802,203원~ 12,323,083원	9,326,986원~ 13,057,779원	9,906,264원~ 13,868,768원	10,485,542원~ 14,679,757원	11,064,820원~ 15,490,74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 160%이하	9,040,517원~ 12,054,021원	10,562,643원~ 14,083,523원	11,192,383원~ 14,923,176원	11,887,517원~ 15,850,021원	12,582,650원~ 16,776,866원	13,277,784원~ 17,703,710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547,269원~	12,323,084원~	13,057,780원~	13,868,769원~	14,679,758원~	15,490,74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3">주택</th>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r> <td colspan="2">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 colspan="2">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head> <tbody> <tr> <td colspan="3">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주택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주택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이 됩니다.</li> <li>- 부동산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li> <li>·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li>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li>·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5-160호(2025.03.31.)]에 따릅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7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li> <li>-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li> <li>■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li> <li>■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천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li> <li>■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li> <li>-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가점항목</th> <th>가점상한</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0">①무주택기간</td> <td rowspan="10">32</td> <td>만30세 미만 미혼자</td> <td>0</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8</td> </tr> <tr> <td>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20</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4</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2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6</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24</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8</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26</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28</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12</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30</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14</td> <td>15년 이상</td> <td>32</td> </tr> <tr> <td>7년 이상 ~ 8년 미만</td> <td>16</td> <td></td> <td></td> </tr> <tr> <td rowspan="4">②부양가족수</td> <td rowspan="4">35</td> <td>0명</td> <td>5</td> <td>4명</td> <td>25</td> </tr> <tr> <td>1명</td> <td>10</td> <td>5명</td> <td>30</td> </tr> <tr> <td>2명</td> <td>15</td> <td>6명 이상</td> <td>35</td> </tr> <tr> <td>3명</td> <td>20</td> <td></td> <td></td> </tr> </tbody> </table>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63호(2024.03.25)]에 따릅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81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li> </ul> </li> <li>※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li>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li> </ul> </li> <li>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li> <li>-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li> </ul> </li> <li>*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li> <li>*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li> <li>*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li> <li>「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li> <li>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li> <li>**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li> <li>①소득구분</li> </ul>					
당첨자 선정방법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table border="1"> <tr> <td>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r> <td>1인 가구</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able>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천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6.04.23.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793,892원	~11,442,863원	~12,125,081원	~12,878,142원	~13,631,203원	~14,384,26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793,893원~ 12,054,021원	11,442,864원~ 14,083,523원	12,125,082원~ 14,923,176원	12,878,143원~ 15,850,021원	13,631,204원~ 16,776,866원	14,384,266원~ 17,703,710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1인 가구	160%이하	~12,054,021원	~14,083,523원	~14,923,176원	~15,850,021원	~16,776,866원	~17,703,710원
		160%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2,054,022원~	14,083,524원~	14,923,177원~	15,850,022원~	16,776,867원~	17,703,71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579,27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비고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tr> <th rowspan="3">주택</th> <th>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r>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이 됩니다.</li> <li>- 부동산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li> </ul>	주택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주택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li> <li>-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3-1516호(2024.03.25.)]에 따릅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li> <li>■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li> </ul>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li> <li>-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한함)</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li> </ul> </li> <li>-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청약예금의 예치금액]</b></p> <table border="1" data-bbox="278 558 2813 722">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li> <li>※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li> </ul>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당첨자 선정 순서</b></li> <li>-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li> <li>-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li> <li>-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li> <li>■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천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li> <li>■ ②가점</li> <li>-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li> </ul> <table border="1" data-bbox="278 1041 2724 1150"> <thead> <tr> <th>구분</th> <th>가점제</th> <th>추첨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60㎡이하</td> <td>40%</td> <td>60%</td> </tr> <tr> <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 <td>40%</td> <td>6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 산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li> </ul> <table border="1" data-bbox="278 1192 2724 1969"> <thead> <tr> <th>가점항목</th> <th>가점상한</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10">①무주택기간</td> <td rowspan="10">32</td> <td>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td> <td>0</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8</td> </tr> <tr> <td>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20</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4</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2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6</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24</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8</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26</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28</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12</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30</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14</td> <td>15년 이상</td> <td>32</td> </tr> <tr> <td>7년 이상 ~ 8년 미만</td> <td>16</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4">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td> <td rowspan="4">35</td> <td>0명</td> <td>5</td> <td>4명</td> <td>25</td> </tr> <tr> <td>1명</td> <td>10</td> <td>5명</td> <td>30</td> </tr> <tr> <td>2명</td> <td>15</td> <td>6명 이상</td> <td>35</td> </tr> <tr> <td>3명</td> <td>20</td> <td></td> <td></td> </tr> <tr> <td rowspan="13">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 <td rowspan="13">17</td> <td>6개월 미만</td> <td>1</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0</td> </tr> <tr> <td>6개월 이상 ~ 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11</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3</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1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4</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13</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5</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14</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6</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15</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7</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16</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8</td> <td>15년 이상</td> <td>17</td> </tr> <tr> <td>7년 이상 ~ 8년 미만</td> <td>9</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배우자</td> <td rowspan="2"></td> <td>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td> <td>0</td>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2</td> </tr> <tr> <td>1년 미만</td> <td>1</td> <td>2년 이상</td> <td>3</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p>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p> <p>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p> <p>4) 확인방법 :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p>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p>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p>5) 확인방법 :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 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주민등록표초본</p>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p>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p>

	<b>■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b>		
	<b>단계</b>	<b>비율</b>	<b>내용</b>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b>■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b>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b>비고</b>	<b>■ 1순위 가점제 청약시 유의사항</b>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b>검색대상</b>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b>주택의 범위</b>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b>주택처분 기준일</b>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3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b>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b>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 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b>조항</b>	<b>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유형</b>	<b>주거전용면적</b>	<b>수도권</b>	<b>비수도권</b>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장소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 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6.05.04.(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 10:00~14:00)	·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주택전시관 접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49 ☎ 032-323-1649	· 일시 : 2026.05.13.(수)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일반 공급	1순위	2026.05.06.(수) 09:00~17:30	·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2순위	2026.05.07.(목) 09:00~17:30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 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주택전시관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됩니다.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될 경우 본 아파트의 당첨을 취소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 ~ 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 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 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 ~ 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를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 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주택전시관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 :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 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li> <li>-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li> </ul>	
공고단지 청약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달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li> <li>-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li> <li>-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li> </ul>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li> <li>- 조회기간 : 2026.05.13.(수) ~ 2026.05.22.(금) (10일간)</li> <li>- 조회기간(10일)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li> <li>-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li> </ul>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일시 : 2026.05.13.(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li> <li>-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li> <li>* <b>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b></li> <li>-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안내**

구분	서류 제출 기간	대상자	접수 장소
내용	2026.05.14.(목) ~ 2026.05.20.(수)	특별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b>(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기간은 별도 안내 예정)</b>	주택전시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49]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li> <li>• 당첨자별로 자격확인서류 및 제출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li> <li>•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li> <li>•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합니다.</li> <li>•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신청 청약자에 한하여 제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li> <li>•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li> <li>• 자격검증 서류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li> <li>•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li> <li>•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li> <li>•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li> <li>•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li> <li>•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li> </ul>		

■ **[표1]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제출 서류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기간 내 제출 / 공통 서류와 당첨 유형별 해당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가능(1. 발급용도 : '기타'선택 → 아파트 계약용 / 2. 제출처 : 'DL이앤씨(주)'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본인 및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전체 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전체 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만 30세 이전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일반공급 가점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해당) - 만 19세 이전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해당)
	○		출입국사실증명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의 경우 미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배우자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으로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부천시)으로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25년 이상)을 명시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증빙서류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 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 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 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등(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 계약서 등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및 세대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당첨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포함)	직계존속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 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자	○		가점 산정기준표	본인	주택전시관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 당첨사실 조회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 거주기간 확인 필수 제출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 산정 불가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 인터넷 청약(청약Home)으로 청약한 경우 생략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 배점 기준표	본인	주택전시관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본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18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미혼인 미성년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 또는 출산이행 확인각서		임신의 경우 (주택전시관 비치)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자격요건확인서	본인	주택전시관 비치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발급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발급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표2] 참조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 입증 서류) ※ 단, 직계존속은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
	○		비사업자 확인각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주택전시관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구원수로 포함하는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현재 배우자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 신생아 우선공급인 경우는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만 18세이상 만19세미만의 미성년 자녀수 산정 시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 또는 출산이행 확인각서		임신의 경우 (주택전시관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전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아래 [표4] 참조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부동산 공시가격확인서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요건확인서	본인	주택전시관 비치(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 등)
	○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본인	공급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의 소득세 납부 입증 서류 * 아래 [표3] 참조 *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이 포함되었을 시 소득금액증명의 총 결정세액이 "0"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세)사실증명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는 개월수(60개월)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하며 1년의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에도 1개년의 실적 으로 인정 가능 *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발급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 서류 *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의 소득 입증 서류 ※ 단, 직계존속은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만 해당
		○	비사업자 확인각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주택전시관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직계존속	당첨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직계비속	현재 배우자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 신생아 우선공급인 경우는 대상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 또는 출산이행 확인각서		임신의 경우 (주택전시관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전원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부동산 공시가격확인서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아래 [표4] 참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노부모 가점표	본인	주택전시관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되어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직계존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 거주기간 확인 필수 제출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직계비속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 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이상 연속된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만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2024.06.19. 이후 출생 예정인 태아가 있어 출산특례로 청약한 경우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만 인정)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2024.06.19. 이후 출생한 입양자녀가 있어 출산특례로 청약한 경우 -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임신증명 또는 출산이행 확인각서	임신의 경우 (주택전시관 비치)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해당 지자체로부터 당시의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이라는 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과세대장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확인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가능(1. 발급용도 : '기타선택'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2. 제출처 : 'DL이앤씨(주)'로 설정하여 발급)
	○		인감도장	본인	공급신청자 본인의 인감도장
	○		위임장	본인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 주택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 변동일/ 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사업주체에 확인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표2]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 자격		소득입증 제출 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이하, 같음)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이 있는 년도의 소득자별 근로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세무서
	금년도 신규 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이하, 같음)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원본(직인 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하거나, 본인의 근로(연봉)계약서상의 총급여를 월할계산하여 추정	①,②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 날인)	①,②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신규취업자 :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② 계속적인 근로자(종합소득세 신고자) : 소득금액증명,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위촉증명서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② 사업자등록증명	①,② 세무서, 홈택스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표준(기준) 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에 신고한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③ 사업자등록증명	① 국민연금공단, ②,③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원본) ② 전년도 재무제표 원본(직인날인) 및 원천징수이행명세서 ③ 사업자등록증명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⑤ 해당 직장 ③ 세무서 ④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세무서, 해당 직장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①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세무서,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행정복지센터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②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반드시 제출 : 전년도 소득이 있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① 주택전시관 비치 ② 세무서
농업인	①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① 행정복지센터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	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① 거주지 관할 구역 고용센터 등 ② 해당 직장

-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상기 소득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 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 제출한 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될 수 있으며, 상기 서류 외 소득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 서류	발급처
자격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이하, 같음)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발급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변동사항 등 전부 표기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① 해당 직장, 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근로/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 제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 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종합소득세 납부자 :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추가 제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③ 해당 직장, 세무서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기간 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 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서류 외 소득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표4]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 입증서류

해당 자격	자산입증 제출 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단위, 주택·건물·토지 대상)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③ 행정복지센터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 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 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②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이택스 (etax.seoul.go.kr) 위택스 (www.wetax.g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www.eum.go.kr)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본인 및 세대원 전원)	① 부동산 소유현황 ※ 발급 방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미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택·건물·토지 대상) ※ 발급 방법 : 위택스 > 발급 > 문서발급 안내 및 발급 > 미과세증명서(전국단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위택스 (www.wetax.go.kr)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천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 서류 외 소득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시어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 거주 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주택전시관으로 통지 후 계약 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잘못 접수된 신청의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9

계약일정 및 체결절차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6.05.26.(화) ~ 2026.05.29.(금) 4일간 10:00 ~ 17:00	주택전시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49]

-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서류제출기간에 부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적격으로 판정 시 예비입주자 동·호수 배정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e편한세상 부천 어반스퀘어 주택전시관에 내방하여 예비입주자 선정에 따른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추후 통보예정이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통보를 받지 못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elife.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 당첨자의 계약사항, 부적격 세대 발생 및 소명여부에 따라 일부 또는 전 주택형의 예비입주자의 공급이 없을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 공급 주택형 발생 시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추첨)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세대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미 방문 시 예비입주자 추첨 참가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공통 서류		○	자격검증서류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추가 개별 통지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주택전시관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가능(1. 발급용도 : '기타선택' → 아파트 계약용 / 2. 제출처 : 'DL이앤씨(주)'로 설정하여 발급)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인지세 납부)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구매 방법 및 금액 - 구매방법 : 우체국, 은행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a href="https://www.e-revenuestamp.or.kr">https://www.e-revenuestamp.or.kr</a> )에 접속, 구매 및 출력 - 구매금액 : 계약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는 균등 납부하여야 하고, 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른 인지세는 각각 납부하여야 함.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해당 지자체로부터 당시의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이라는 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과세대장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확인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가능(1. 발급용도 : '기타선택'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2. 제출처 : 'DL이앤씨(주)'로 설정하여 발급)
	○		위임장	본인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 주택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일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 재외 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부)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구비서류의 제출은 계약체결 이전 주택전시관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계약 시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시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아파트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1005-704-878471	우리은행	소사3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외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우리은행, 1005-704-878471, 예금주 : 소사3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외] 입니다.

※ 지정된 계약 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중도금, 잔금도 본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일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분양계약 체결 시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가상계좌)와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시 - 101동 501호 계약자 → '10105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주택전시관에서는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통장 이용 등 계약금 납부 주체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부정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사업주체에서는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 그 결과를 당첨자에게 즉시 통보하며, 당첨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 중복 당첨시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처리 됩니다.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①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②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제53조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제외)
-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 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부적격 당첨자는 계약기간 중 계약장소에 방문하여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사업주체에 제출하고 '당첨사실 삭제 및 계좌부활요청서' (계약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부적격 당첨자명단 통보가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10**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계약**

■ **추가선택품목(I) 발코니 확장비 안내**

- 추가선택품목(I)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진행해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아파트 분양대금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비용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세공과금 등은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 관청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I) 발코니 확장비 안내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타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30%)	잔금(60%)
		계약 시	2026.09.28.	입주 시
59A	22,176,000	2,217,600	6,652,800	13,305,600
59B	22,352,000	2,235,200	6,705,600	13,411,200
74A	27,368,000	2,736,800	8,210,400	16,420,800
74B	27,467,000	2,746,700	8,240,100	16,480,200
84A	31,020,000	3,102,000	9,306,000	18,612,000
84B	31,086,000	3,108,600	9,325,800	18,651,600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각 주택형별 발코니 면적 및 창호 규격이 상이하여 주택형별 확장비가 다르게 산정되었으니, 주택전시관 등에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시 자재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주택전시관 등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I) 발코니 확장비 납부 방법

구분	납부금액(비율)	납부시기
계약금	공급금액의 10%	계약 시
중도금	공급금액의 30%	2026.09.28.
잔금	공급금액의 60%	입주 시(입주지정기간 내)

■ 추가선택품목(I)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구분	계약주체	계좌구분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3-1BL(101동~107동) 3-2BL(201동~204동) 3-3BL(301동~302동)	디엘이앤씨(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1005-704-894821 (별도의 가상계좌가 부여될 예정이므로, 계약 전 가상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디엘이앤씨(주)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각 세대별로 상이하고, 아파트 분양대금 및 각 세대별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가상계좌)와도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이전 고지할 예정이며, 계약 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할 예정입니다.

※ 지정된 계약 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중도금, 잔금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일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시 - 101동 101호 계약자 → '1010101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주택전시관에서는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I) 발코니 확장 공사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은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 설치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주택전시관 내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습니다.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의 제정·개정, 관계법령 해석의 변경, 인허가 조건의 변경 등 사업주체의 귀책사유 없이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로 발코니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에는 수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타입)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홍보자료 및 주택전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동일 주택형(타입)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탁기 설치 공간 및 수전 등이 설치되는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각 주택형(타입)별 발코니 면적 및 창호 규격이 상이하여 확장금액이 다르게 산정되었으니, 주택전시관 등에서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미선택 시 각 실과 발코니가 만나는 면에 창호가 설치되며 발코니 외부 쪽으로 창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로 인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높이가 축소 시공되며 발코니의 바닥레벨이 거실 및 침실보다 높게 시공되어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난간창에서 유리난간 매입창으로 적용되며, 구조 계산에 따라 VENT 창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수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세대는 미확장 발코니(다용도실)에 선홈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미선택 세대가 있을 경우 발코니 외부 창호가 미설치 되므로 CG 및 모형과 외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은 '13.유의사항'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II)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 추가선택품목(II)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2026.05.26.(화)~2026.05.29.(금))과 동시에 계약 진행해야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주택형	제조사	구성		판매가격	비고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택1, 구성 택1)	전 세대	LG/삼성	일반형	거실+침실1 / 실내기 2대	3,800,000	※ 홈 네트워크 연결기능 포함 와이파이 기능 장착
		LG/삼성	일반형	거실+침실1+침실2+침실3 / 실내기 4대	6,800,000	
		LG	프리미엄형	거실+침실1 / 실내기 2대	4,200,000	※ 제품 모델은 실별로 상이하고 표기량이 많아 판매 시 별도 안내
		LG	프리미엄형	거실+침실1+침실2+침실3 / 실내기 4대	7,600,000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의 모델번호는 실별로 상이하고 표기량이 많아 추가선택품목 판매 시 안내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 산정 시, 실별 면적에 따른 실외기 용량 차이로 인해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제품의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의 출시, 시장 상황의 변화 등 당초 계약모델의 타 모델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공정상의 사유로 계약이후 추가, 변경, 해지가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제조사 사양에 따라 실내기 또는 실외기 규격이 정해집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 수량에 따라 실외기 용량 또는 개수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등기구, 환기디퓨저 등 천장 시설물 위치에 따라 실내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환기디퓨저, 욕실 배기팬, 스프링클러,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운전소음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바람 토출구에 이슬이 맺히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외부 온도 대비 5도씨 이내로 설정하며 바람세기를 강풍으로 바람날개 방향을 좌우, 상하 반복하여 움직여서 가동해 주시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실외기 설치 공간에 냉매배관 및 응축수 배관이 일부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별도의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운전 시 반드시 실외기실 그릴을 개방해야 하며, 그릴을 닫고 운전하거나 그릴창 주변에 물건을 적치할 경우 성능 및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세대 내 구조, 실내기 선택 수량, 운전 조건 또는 실내 환경 등에 따라 냉방 사각지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은 시운전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 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되게 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 시 입주 후 개별 시공하는 경우 배관, 실내기, 실외기 추가 설치 및 전기 추가 공사가 필요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 시 입주 후 개별 시공하는 배관, 실내기 및 실외기등 추가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공사와 무관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본 아파트의 시공사에게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 시 에어컨은 하향실 피난사다리 및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 시 추후 입주자 별도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 홈네트워크 시스템 및 월패드 시스템 연동이 불가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LG일반형과 LG프리미엄형은 세대 내 혼용 선택 불가합니다. (LG 제조사 기술적 호환 불가)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하는 천장형 냉매배관이 설치되어 스탠드형이나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가 불가합니다. (입주 후 스탠드형이나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를 원하는 경우 별도의 공사가 필요함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II) 납부일정

계약금(10%)	중도금(30%)	잔금(60%)
계약 시	2026.09.28.	입주 시(입주지정기간 내)

■ 추가선택품목(II)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비용(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1005-204-915032 (별도의 가상계좌가 부여될 예정이므로, 계약 전 가상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디엘이앤씨(주)

- ※ 상기 계좌와 아파트 공급대금 및 추가선택품목(I)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입금 시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비용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세대별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상기 모계좌로 관리됩니다.
- ※ 각 회차별 납부 및 납부금액에 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II) 비용은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주택전시관 현금수납 불가)만 가능합니다. (신용카드결제 불가)
- ※ 지정된 납부일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시 동(3자리), 호수(4자리)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101호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하여야 함)
- ※ 추가선택품목(II) 비용은 추가선택품목(II) 계약체결 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은 지정일에 납부하며, 입주 시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계약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III)

- ※ 추가선택품목(III)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과 별도로 계약 진행 예정이며, 계약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디 셀렉션 인테리어 스타일 선택

- ※ 디 셀렉션 인테리어 스타일 선택시 스타일별로 구성된 내용은 변경이 불가하고 각 스타일간 개별품목의 교차 선택은 불가합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타입	품목		구성	판매가격	비고
59A	내추럴 클래식	신발장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신발장(수입 푸트라 PET)	8,310,000	※ 디 셀렉션 스타일 선택시, 해당 스타일의 구성은 변경할 수 없으며, 스타일간 개별 품목의 교차선택은 불가함
		주방상하부장+상판/벽마감재업그레이드+가구조명	상하부장(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가구 조명		
		냉장고장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선반 수납형 키큰장(수입 푸트라 PET)		
	블랑 클래식	신발장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신발장(수입 푸트라 PET)	8,970,000	
		주방상하부장+상판/벽마감재업그레이드+가구조명	상하부장(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나폴리베이지)+가구 조명		
		냉장고장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선반 수납형 키큰장(수입 푸트라 PET)		
59B	내추럴 클래식	신발장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신발장(수입 푸트라 PET)	8,120,000	
		주방상하부장+상판/벽마감재업그레이드+가구조명	상하부장(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가구 조명		
		냉장고장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		
	블랑 클래식	신발장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신발장(수입 푸트라 PET)	8,800,000	
		주방상하부장+상판/벽마감재업그레이드+가구조명	상하부장(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나폴리베이지)+가구 조명		
		냉장고장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		
74A	내추럴 클래식	신발장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신발장(수입 푸트라 PET)	9,320,000	
		주방상하부장+상판/벽마감재업그레이드+가구조명	상하부장(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가구 조명		
		냉장고장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선반 수납형 키큰장(수입 푸트라 PET)		
	블랑 클래식	신발장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신발장(수입 푸트라 PET)	10,060,000	
		주방상하부장+상판/벽마감재업그레이드+가구조명	상하부장(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나폴리베이지)+가구 조명		
		냉장고장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선반 수납형 키큰장(수입 푸트라 PET)		
74B	내추럴 클래식	신발장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가구 도어(수입 푸트라 PET)	8,510,000	
		주방상하부장+상판/벽마감재업그레이드+가구조명	상하부장(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가구 조명		
		냉장고장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선반 수납형 키큰장(수입 푸트라 PET)		
	블랑 클래식	신발장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가구 도어(수입 푸트라 PET)	9,180,000	
		주방상하부장+상판/벽마감재업그레이드+가구조명	상하부장(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나폴리베이지)+가구 조명		
		냉장고장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선반 수납형 키큰장(수입 푸트라 PET)		
84A	내추럴 클래식	신발장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가구 도어(수입 푸트라 PET)	7,640,000	
		주방상하부장+상판/벽마감재업그레이드+가구조명	상하부장(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가구 조명		
		냉장고장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		
	블랑 클래식	신발장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가구 도어(수입 푸트라 PET)	8,230,000	
		주방상하부장+상판/벽마감재업그레이드+가구조명	상하부장(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나폴리베이지)+가구 조명		
		냉장고장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		

84B	내추럴 클래식	신발장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가구 도어(수입 푸트라 PET)	8,820,000	
		주방상하부장+상판/벽마감재업그레이드+가구조명	상하부장(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가구 조명		
		냉장고장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선반 수납형 키큰장(수입 푸트라 PET)		
	블랑 클래식	신발장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가구 도어(수입 푸트라 PET)	9,560,000	
		주방상하부장+상판/벽마감재업그레이드+가구조명	상하부장(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나폴리베이지)+가구 조명		
		냉장고장	냉장고장(수입 푸트라 PET)+선반 수납형 키큰장(수입 푸트라 PET)		

■ 현관 / 중문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목	주택형	구성	판매가격	비고
공통	현관 중문	59A	슬라이딩 도어	1,500,000	-
		59B	슬라이딩 도어	1,500,000	-
		74A	스윙도어	1,900,000	-
		74B	슬라이딩 도어	1,500,000	-
		84A	슬라이딩 도어	1,500,000	-
		84B	슬라이딩 도어	1,500,000	-
공통	팬트리 시스템 선반	74B	포스트형 시스템 선반	500,000	-
		84A	포스트형 시스템 선반	470,000	-
		84B	포스트형 시스템 선반	540,000	-
미니멀	오픈형 프리미엄 신발장+신발장	59A	오픈형 신발장(PET)+신발장(PET)+신발살균기+에어브러시+가구 조명 +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실버쉐이드	2,430,000	-
		59B	오픈형 신발장(PET)+신발장(PET)+신발살균기+에어브러시+가구 조명 +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실버쉐이드	2,620,000	-
		74A	오픈형 신발장(PET)+신발장(PET)+신발살균기+에어브러시+가구 조명 +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실버쉐이드	2,590,000	-
	오픈형 프리미엄 신발장+팬트리도어	74B	오픈형 신발장(PET)+가구 도어(PET)+신발살균기+에어브러시+가구 조명 +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실버쉐이드	1,780,000	-
		84A	오픈형 신발장(PET)+가구 도어(PET)+신발살균기+에어브러시+가구 조명 +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실버쉐이드	1,760,000	-
		84B	오픈형 신발장(PET)+가구 도어(PET)+신발살균기+에어브러시+가구 조명 +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실버쉐이드	1,750,000	-
내추럴 클래식	오픈형 프리미엄 신발장+신발장	59A	오픈형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신발장(수입 푸트라 PET)+신발살균기+에어브러시 +가구 조명+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실버쉐이드	2,430,000	※ 디 셀렉션 인테리어 스타일 선택 시 구매가능
		59B	오픈형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신발장(수입 푸트라 PET)+신발살균기+에어브러시 +가구 조명+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실버쉐이드	2,500,000	
		74A	오픈형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신발장(수입 푸트라 PET)+신발살균기+에어브러시 +가구 조명+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실버쉐이드	2,490,000	
	오픈형 프리미엄 신발장+팬트리도어	74B	오픈형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가구 도어(수입 푸트라 PET)+신발살균기+에어브러시 +가구 조명+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실버쉐이드	2,340,000	
		84A	오픈형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가구 도어(수입 푸트라 PET)+신발살균기+에어브러시 +가구 조명+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실버쉐이드	2,290,000	
		84B	오픈형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가구 도어(수입 푸트라 PET)+신발살균기+에어브러시 +가구 조명+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실버쉐이드	2,270,000	
블랑 클래식	오픈형 프리미엄 신발장+신발장	59A	오픈형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신발장(수입 푸트라 PET)+신발살균기+에어브러시 +가구 조명+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실버쉐이드	2,560,000	※ 디 셀렉션 인테리어 스타일 선택 시 구매가능
		59B	오픈형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신발장(수입 푸트라 PET)+신발살균기+에어브러시 +가구 조명+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실버쉐이드	2,640,000	
		74A	오픈형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신발장(수입 푸트라 PET)+신발살균기+에어브러시 +가구 조명+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실버쉐이드	2,630,000	
	오픈형 프리미엄 신발장+팬트리도어	74B	오픈형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가구 도어(수입 푸트라 PET)+신발살균기+에어브러시 +가구 조명+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실버쉐이드	2,460,000	
		84A	오픈형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가구 도어(수입 푸트라 PET)+신발살균기+에어브러시 +가구 조명+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실버쉐이드	2,410,000	
		84B	오픈형 신발장(수입 푸트라 PET)+가구 도어(수입 푸트라 PET)+신발살균기+에어브러시 +가구 조명+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실버쉐이드	2,390,000	

■ 거실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목	주택형	구성	판매가격	비고
공통	디자인월	59A	거실/복도면	2,270,000	※ 기본 제공 디자인 월 적용면 및 냉장고면 제외
		59B	거실/복도면	1,720,000	
		74A	거실/복도면	2,770,000	
		74B	거실/복도면	1,870,000	
		84A	거실/복도면	2,040,000	
		84B	거실/복도면	2,180,000	
공통	인피니티 도어	59B	인피니티 도어(침실1)	1,350,000	-
		74B	인피니티 도어(침실1)	1,350,000	
		84B	인피니티 도어(침실1)	1,350,000	
공통	인피니티 도어	59A	전체 인피니티 도어(침실1,침실2,침실3,욕실2)	5,400,000	※ 디자인월선택시 구매가능
		59B	전체 인피니티 도어(침실1,침실2,침실3,욕실2)	5,400,000	
		74A	전체 인피니티 도어(침실1,침실2,침실3,욕실2)	5,400,000	
		74B	전체 인피니티 도어(침실1,침실2,침실3,욕실2)	5,400,000	
		84A	전체 인피니티 도어(침실1,침실2,침실3,욕실2)	5,400,000	
		84B	전체 인피니티 도어(침실1,침실2,침실3,욕실2)	5,400,000	

■ 주방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목	주택형	구성	판매가격	비고
미니멀	주방 상판/벽 마감재 업그레이드+가구 조명	59A	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골든쇼어)+가구 조명	2,910,000	-
		59B	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골든쇼어)+가구 조명	3,020,000	
		74A	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골든쇼어)+가구 조명	3,220,000	
		74B	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골든쇼어)+가구 조명	3,040,000	
		84A	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골든쇼어)+가구 조명	2,550,000	
		84B	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골든쇼어)+가구 조명	3,460,000	
미니멀	냉장고장	59A	냉장고장(PET)+선반 수납형 키큰장(PET)	1,540,000	-
		59B	냉장고장(PET)	1,170,000	
		74A	냉장고장(PET)+선반 수납형 키큰장(PET)	1,900,000	
		74B	냉장고장(PET)+선반 수납형 키큰장(PET)	1,540,000	
		84A	냉장고장(PET)	1,270,000	
		84B	냉장고장(PET)+선반 수납형 키큰장(PET)	1,540,000	
미니멀	아일랜드장	59B	아일랜드장 기본형(PET)+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골든쇼어)+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	1,390,000	※ 주방 상판/벽 마감재 업그레이드+가구 조명 선택 시 구매 가능 ※ 타입별 아일랜드장 택1
			양면수납형 아일랜드장(PET)+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골든쇼어)+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	1,550,000	
			식탁결합형 아일랜드장(PET)+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골든쇼어)+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	2,820,000	
		74B	아일랜드장 기본형(PET)+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골든쇼어)+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	1,390,000	
			양면수납형 아일랜드장(PET)+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골든쇼어)+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	1,550,000	
			식탁결합형 아일랜드장(PET)+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골든쇼어)+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	2,920,000	
		84A	아일랜드장 기본형(PET)+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골든쇼어)+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	2,560,000	
			양면수납형 아일랜드장(PET)+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골든쇼어)+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	2,940,000	
			식탁결합형 아일랜드장(PET)+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골든쇼어)+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	2,970,000	
		84B	아일랜드장 기본형(PET)+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골든쇼어)+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	1,990,000	
			양면수납형 아일랜드장(PET)+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골든쇼어)+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	2,260,000	
			식탁결합형 아일랜드장(PET)+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골든쇼어)+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	2,970,000	
내추럴 클래식	아일랜드장	59B	아일랜드장 기본형(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	1,920,000	※ 디 셀렉션 인테리어 스타일 선택 시 구매가능 ※ 타입별 아일랜드장 택1
			양면수납형 아일랜드장(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	2,150,000	
		74B	식탁결합형 아일랜드장(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	3,990,000	
			아일랜드장 기본형(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	1,920,000	

			양면수납형 아일랜드장(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 +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	2,150,000	
			식탁결합형 아일랜드장(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 +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	4,130,000	
		84A	아일랜드장 기본형(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 +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	3,640,000	
			양면수납형 아일랜드장(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 +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	4,200,000	
		84B	아일랜드장 기본형(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 +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	2,800,000	
			양면수납형 아일랜드장(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 +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	3,200,000	
식탁결합형 아일랜드장(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 +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	4,200,000				
블랑 클래식	아일랜드장	59B	아일랜드장 기본형(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나폴리베이지) +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	2,010,000	※ 디 셀렉션 인테리어 스타일 선택 시 구매가능 ※ 타입별 아일랜드장 택1
			양면수납형 아일랜드장(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나폴리베이지) +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	2,260,000	
			식탁결합형 아일랜드장(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나폴리베이지) +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	4,230,000	
		74B	아일랜드장 기본형(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나폴리베이지) +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	2,010,000	
			양면수납형 아일랜드장(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나폴리베이지) +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	2,260,000	
			식탁결합형 아일랜드장(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나폴리베이지) +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	4,390,000	
		84A	아일랜드장 기본형(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나폴리베이지) +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	3,820,000	
			양면수납형 아일랜드장(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나폴리베이지) +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	4,420,000	
		84B	아일랜드장 기본형(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나폴리베이지) +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	2,940,000	
			양면수납형 아일랜드장(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나폴리베이지) +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	3,360,000	
			식탁결합형 아일랜드장(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나폴리베이지) +무선충전 상판매입 콘센트	4,460,000	

■ 침실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주택형	품목	구성	판매가격	비고
미니멀	59A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PET)	2,230,000	※ 택1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의류관리기형	불박이장(PET)+의류관리기장(PET)	1,540,000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파우더 결합형	불박이장(PET)+화장대(PET)+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골든쇼어)+콘센트+다운라이트	3,270,000	
	59B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PET)	2,470,000	-
		침실1 화장대+드레스룸 불박이장	화장대(PET)+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골든쇼어)+콘센트+다운라이트+불박이장(PET) +디자인 월	3,190,000	
		침실1 화장대 +드레스룸 불박이장 의류관리기형	화장대(PET)+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골든쇼어)+콘센트+다운라이트+불박이장(PET) +의류관리기장(PET)+디자인 월	3,170,000	
	74A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PET)	2,470,000	-
		침실1 화장대+오픈형 수납장	화장대(PET)+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골든쇼어)+콘센트+다운라이트+오픈형 행거 +서랍장(PET)+가구 조명+디자인 월	3,460,000	
		침실1 화장대 +오픈형 수납장 의류관리기형	화장대(PET)+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골든쇼어)+콘센트+다운라이트+오픈형 행거 +서랍장(PET)+의류관리기장(PET)+디자인 월	2,610,000	
	74B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PET)	2,670,000	-
		침실1 화장대+드레스룸 불박이장 +오픈형 수납장	화장대(PET)+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골든쇼어)+콘센트+다운라이트+불박이장(PET) +오픈형 행거+서랍장(PET)+가구 조명+디자인 월	5,380,000	
		침실1 화장대+드레스룸 불박이장 의류관리기형+오픈형 수납장	화장대(PET)+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골든쇼어)+콘센트+다운라이트+불박이장(PET) +의류관리기장(PET)+오픈형 행거+서랍장(PET)+가구 조명+디자인 월	5,410,000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PET)	2,920,000	-		
	84A	침실1 화장대+드레스룸 불박이장 +오픈형 수납장	화장대(PET)+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골든쇼어)+콘센트+다운라이트 +불박이장(PET)+오픈형 행거+서랍장(PET)+가구 조명+디자인 월	6,700,000	※ 택1		
		침실1 화장대+드레스룸 불박이장+오픈형 수납장 의류관리기형	화장대(PET)+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골든쇼어)+콘센트+다운라이트 +불박이장(PET)+의류관리기장(PET)+오픈형 행거+서랍장(PET)+가구 조명+디자인 월	6,460,000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PET)	2,920,000	-		
	84B	침실1 화장대+드레스룸 불박이장+오픈형 수납장	화장대(PET)+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골든쇼어)+콘센트+다운라이트 +불박이장(PET)+오픈형 행거+서랍장(PET)+가구 조명+디자인 월	5,430,000	※ 택1		
		침실1 화장대+드레스룸 불박이장+오픈형 수납장 의류관리기형	화장대(PET)+엔지니어드 스톤(래디언스-골든쇼어)+콘센트+다운라이트 +불박이장(PET)+의류관리기장(PET)+오픈형 행거+서랍장(PET)+가구 조명+디자인 월	5,440,000			
내추럴 클래식	59A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	3,410,000	※ 디 셀렉션 인테리어 스타일 선택 시 구매가능 ※ 타입별 택1 (미니멀 참조)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의류관리기형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의류관리기장(수입 푸트라 PET)	2,340,000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파우더 결합형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화장대(수입 푸트라 PET) +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콘센트+다운라이트+벽부형 조명	4,890,000			
	59B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	3,440,000			
		침실1 화장대+드레스룸 불박이장	화장대(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콘센트+다운라이트 +벽부형 조명+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디자인 월	4,560,000			
		침실1 화장대 +드레스룸 불박이장 의류관리기형	화장대(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콘센트+다운라이트 +벽부형 조명+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의류관리기장(수입 푸트라 PET)+디자인 월	4,530,000			
	74A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	3,440,000			
		침실1 화장대+오픈형 수납장	화장대(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콘센트+다운라이트+ 벽부형 조명+오픈형 행거+서랍장(수입 푸트라 PET)+가구 조명+디자인 월	4,860,000			
		침실1 화장대 +오픈형 수납장 의류관리기형	화장대(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콘센트+다운라이트+ 벽부형 조명+오픈형 행거+서랍장(수입 푸트라 PET)+의류관리기장(수입 푸트라 PET)+디자인 월	3,840,000			
	74B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	4,030,000			
		침실1 화장대+드레스룸 불박이장 +오픈형 수납장	화장대(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콘센트+다운라이트+ 벽부형 조명+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오픈형 행거+서랍장(수입 푸트라 PET)+ 가구 조명+디자인 월	7,600,000			
		침실1 화장대+드레스룸 불박이장 +오픈형 수납장 의류관리기형	화장대(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콘센트+다운라이트+ 벽부형 조명+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 의류관리기장(수입 푸트라 PET)+오픈형 행거+ 서랍장(수입 푸트라 PET)+가구 조명+디자인 월	7,650,000			
	84A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	4,410,000			
		침실1 화장대+드레스룸 불박이장 +오픈형 수납장	화장대(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콘센트+다운라이트+ 벽부형 조명+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오픈형 행거+서랍장(수입 푸트라 PET)+ 가구 조명+디자인 월	9,490,000			
		침실1 화장대+드레스룸 불박이장 +오픈형 수납장 의류관리기형	화장대(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콘센트+다운라이트+ 벽부형 조명+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의류관리기장(수입 푸트라 PET)+오픈형 행거+ 서랍장(수입 푸트라 PET)+가구 조명+디자인 월	9,130,000			
	84B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	4,410,000			
		침실1 화장대+드레스룸 불박이장 +오픈형 수납장	화장대(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콘센트+다운라이트+ 벽부형 조명+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오픈형 행거+서랍장(수입 푸트라 PET)+ 가구 조명+디자인 월	7,670,000			
		침실1 화장대+드레스룸 불박이장 +오픈형 수납장 의류관리기형	화장대(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솔라로)+콘센트+다운라이트+ 벽부형 조명+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의류관리기장(수입 푸트라 PET)+오픈형 행거+ 서랍장(수입 푸트라 PET)+가구 조명+디자인 월	7,700,000			
	블랑클래식	59A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		3,530,000	※ 디 셀렉션 인테리어 스타일 선택 시 구매가능 ※ 타입별 택1 (미니멀 참조)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의류관리기형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의류관리기장(수입 푸트라 PET)		2,420,000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파우더 결합형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화장대(수입 푸트라 PET) +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나폴리베이지)+콘센트+다운라이트+벽부형 조명		5,070,000	
59B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	3,550,000			
		침실1 화장대+드레스룸 불박이장	화장대(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나폴리베이지+콘센트 +다운라이트+벽부형 조명+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디자인 월	4,740,000			
		침실1 화장대 +드레스룸 불박이장 의류관리기형	화장대(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나폴리베이지+콘센트+다운라 이트+벽부형 조명+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의류관리기장(수입 푸트라 PET)+디자인 월	4,700,000			
74A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	3,550,000				

		침실1 화장대+오픈형 수납장	화장대(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나폴리베이지+콘센트+다운라이트+벽부형 조명+오픈형 행거+서랍장(수입 푸트라 PET)+가구 조명+디자인 월	5,030,000		
		침실1 화장대 +오픈형 수납장 의류관리기형	화장대(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나폴리베이지+콘센트+다운라이트+벽부형 조명+오픈형 행거+서랍장(수입 푸트라 PET)+의류관리기장(수입 푸트라 PET)+디자인 월	3,980,000		
	74B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	4,170,000		
		침실1 화장대+드레스룸 불박이장 +오픈형 수납장	화장대(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나폴리베이지+콘센트+다운라이트+벽부형 조명+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오픈형 행거+서랍장(수입 푸트라 PET)+가구 조명+디자인 월	7,880,000		
		침실1 화장대+드레스룸 불박이장 의류관리기형+오픈형 수납장	화장대(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나폴리베이지+콘센트+다운라이트+벽부형 조명+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의류관리기장(수입 푸트라 PET)+오픈형 행거+서랍장(수입 푸트라 PET)+가구 조명+디자인 월	7,930,000		
	84A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	4,560,000		
		침실1 화장대+드레스룸 불박이장 +오픈형 수납장	화장대(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나폴리베이지+콘센트+다운라이트+벽부형 조명+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오픈형 행거+서랍장(수입 푸트라 PET)+가구 조명+디자인 월	9,830,000		
		침실1 화장대+드레스룸 불박이장 의류관리기형+오픈형 수납장	화장대(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나폴리베이지+콘센트+다운라이트+벽부형 조명+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의류관리기장(수입 푸트라 PET)+오픈형 행거+서랍장(수입 푸트라 PET)+가구 조명+디자인 월	9,460,000		
	84B	침실1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	4,560,000		
		침실1 화장대+드레스룸 불박이장 +오픈형 수납장	화장대(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나폴리베이지+콘센트+다운라이트+벽부형 조명+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오픈형 행거+서랍장(수입 푸트라 PET)+가구 조명+디자인 월	7,950,000		
		침실1 화장대+드레스룸 불박이장 의류관리기형+오픈형 수납장	화장대(수입 푸트라 PET)+엔지니어드 스톤-시러스 프레스티지/나폴리베이지+콘센트+다운라이트+벽부형 조명+불박이장(수입 푸트라 PET)+의류관리기장(수입 푸트라 PET)+오픈형 행거+서랍장(수입 푸트라 PET)+가구 조명+디자인 월	7,980,000		
	공통	59A	침실2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PET)	2,260,000	※택1
침실2 데스크형 불박이장 책상측면 오픈형			불박이장(PET)+데스크(PET)+책상 측면장(PET)+가구 조명+상판매입 콘센트	3,840,000		
59B		침실2 불박이장	불박이장(PET)	1,270,000	※택1	
		침실2 데스크형 불박이장	불박이장(PET)+데스크(PET)+가구 조명+상판매입 콘센트	3,800,000		
74A		침실2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PET)	2,300,000	※택1 ※침대책상결합형 불박이장의 경우 매트리스 제외	
		침실2 데스크형 불박이장 책상측면 오픈형	불박이장(PET)+데스크(PET)+책상 측면장(PET)+가구 조명+상판매입 콘센트	3,840,000		
		침실2 침대책상결합형 불박이장	불박이장(PET)+데스크(PET)+침대(PET)+상판매입 콘센트	5,650,000		
74B		침실2 불박이장	불박이장(PET)	1,280,000	※택1 ※침대책상결합형 불박이장의 경우 매트리스 제외	
		침실2 데스크형 불박이장 책상측면 오픈형	불박이장(PET)+데스크(PET)+책상 측면장(PET)+가구 조명+상판매입 콘센트	3,840,000		
		침실2 침대책상결합형 불박이장	불박이장(PET)+데스크(PET)+침대(PET)+상판매입 콘센트	5,560,000		
84A		침실2 불박이장	불박이장(PET)	1,280,000	※택1 ※침대책상결합형 불박이장의 경우 매트리스 제외	
		침실2 데스크형 불박이장 책상측면 오픈형	불박이장(PET)+데스크(PET)+책상 측면장(PET)+가구 조명+상판매입 콘센트	4,170,000		
		침실2 침대책상결합형 불박이장	불박이장(PET)+데스크(PET)+침대(PET)+상판매입 콘센트	5,800,000		
84B		침실2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PET)	2,540,000	※택1 ※침대책상결합형 불박이장의 경우 매트리스 제외	
		침실2 데스크형 불박이장 책상측면 오픈형	불박이장(PET)+데스크(PET)+책상 측면장(PET)+가구 조명+상판매입 콘센트	4,170,000		
		침실2 침대책상결합형 불박이장	불박이장(PET)+데스크(PET)+침대(PET)+상판매입 콘센트	5,770,000		
공통		59A	침실3 불박이장	불박이장(PET)	1,750,000	-
			침실3 불박이장	불박이장(PET)	1,220,000	
	59B	침실3 데스크형 불박이장	불박이장(PET)+데스크(PET)+가구 조명+상판매입 콘센트	3,760,000	※택1	
		침실3 침대책상결합형 불박이장	불박이장(PET)+데스크(PET)+침대(PET)+상판매입 콘센트	5,770,000		
	74A	침실3 불박이장	불박이장(PET)	1,990,000	-	
		침실3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PET)	2,280,000		
		침실3 데스크형 불박이장 책상측면 오픈형	불박이장(PET)+데스크(PET)+책상 측면장(PET)+가구 조명+상판매입 콘센트	3,840,000		
	74B	침실3 침대책상결합형 불박이장	불박이장(PET)+데스크(PET)+침대(PET)+상판매입 콘센트	5,590,000	※택1 ※침대책상 결합형불박이장의 경우 매트리스 제외	
		침실3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PET)	2,550,000		
		침실3 데스크형 불박이장 책상측면 오픈형	불박이장(PET)+데스크(PET)+책상 측면장(PET)+가구 조명+상판매입 콘센트	4,170,000		
	84A	침실3 침대책상결합형 불박이장	불박이장(PET)+데스크(PET)+침대(PET)+상판매입 콘센트	5,830,000	※택1 ※침대책상 결합형불박이장의 경우 매트리스 제외	
		침실3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PET)	2,550,000		
침실3 데스크형 불박이장		불박이장(PET)+데스크(PET)+책상 측면장(PET)+가구 조명+상판매입 콘센트	4,170,000			
84B	침실3 침대책상결합형 불박이장	불박이장(PET)+데스크(PET)+침대(PET)+상판매입 콘센트	5,830,000	※택1 ※침대책상 결합형불박이장의 경우 매트리스 제외		
	침실3 와이드 불박이장	불박이장(PET)	2,550,000			
	침실3 데스크형 불박이장	불박이장(PET)+데스크(PET)+책상 측면장(PET)+가구 조명+상판매입 콘센트	4,170,000			

공통	59A, 59B, 74A, 74B	침실1 스마트 스위트룸/내추럴	내추럴 헤드보드 침대+사이드테이블 1개+다운라이트 특화(확산형)+독서등 1개 +통합컨트롤 조명제어시스템+스마트 전동커튼레일 2열	4,700,000	※택1 ※매트리스제외/ 스마트홈 연계 조명 시스템 선택시 구매가능
		침실1 스마트 스위트룸/브라운	브라운 헤드보드 침대+사이드테이블 1개+다운라이트 특화(확산형)+독서등 1개 +통합컨트롤 조명제어시스템+스마트 전동커튼레일 2열	4,750,000	
공통	84A, 84B	침실1 스마트 스위트룸/내추럴	내추럴 헤드보드 침대+사이드테이블 2개+다운라이트 특화(확산형)+독서등 2개 +통합컨트롤 조명제어시스템+스마트 전동커튼레일 2열	5,340,000	※택1 ※매트리스제외/ 스마트홈 연계 조명 시스템 선택시 구매가능
		침실1 스마트 스위트룸/브라운	브라운 헤드보드 침대+사이드테이블 2개+다운라이트 특화(확산형)+독서등 2개 +통합컨트롤 조명제어시스템+스마트 전동커튼레일 2열	5,440,000	
공통	전타입	매트리스	ACE SUITE GRAND(킹사이즈, 가로1600mm, 세로2000mm, 높이320mm)	1,930,000	※ 침실1 스마트 스위트룸 선택 시 구매 가능
	74A, 74B, 84A, 84B	매트리스	ACE SUITE COZY(슈퍼싱글사이즈, 가로1100mm, 세로2000mm, 높이270mm)	1,080,000	※ 침대책상결합형 불박이장 선택 시 구매가능

■ 조명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목	주택형	구성	판매가격	비고
공통	스마트홈 연계 조명 시스템	59A	거실/주방/복도 조명 다운라이트 특화+거실 다운라이트 디밍 제어시스템(12단계 밝기 조절) +거실 커튼박스 간접조명+침실 디밍 제어시스템(12단계 색온도, 밝기 조절)+욕실 센서미등 겸용 다운라이트+거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침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4,650,000	-
	주방 마그네틱 트랙조명		마그네틱 트랙조명	1,090,000	※ 스마트홈 연계 조명 시스템 선택 시 구매가능
공통	스마트홈 연계 조명 시스템	59B	거실/주방/복도 조명 다운라이트 특화+거실 다운라이트 디밍 제어시스템(12단계 밝기 조절) +거실 커튼박스 간접조명+침실 디밍 제어시스템(12단계 색온도, 밝기 조절)+욕실 센서미등 겸용 다운라이트+거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침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4,720,000	-
	주방 마그네틱 트랙조명		마그네틱 트랙조명	1,100,000	※ 스마트홈 연계 조명 시스템 선택 시 구매가능
공통	스마트홈 연계 조명 시스템	74A	거실/주방/복도 조명 다운라이트 특화+거실 다운라이트 디밍 제어시스템(12단계 밝기 조절) +거실 커튼박스 간접조명+침실 디밍 제어시스템(12단계 색온도, 밝기 조절)+욕실 센서미등 겸용 다운라이트+거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침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4,520,000	-
	주방 마그네틱 트랙조명		마그네틱 트랙조명	1,520,000	※ 스마트홈 연계 조명 시스템 선택 시 구매가능
공통	스마트홈 연계 조명 시스템	74B	거실/주방/복도 조명 다운라이트 특화+거실 다운라이트 디밍 제어시스템(12단계 밝기 조절) +거실 커튼박스 간접조명+침실 디밍 제어시스템(12단계 색온도, 밝기 조절)+욕실 센서미등 겸용 다운라이트+거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침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4,620,000	-
	주방 마그네틱 트랙조명		마그네틱 트랙조명	1,320,000	※ 스마트홈 연계 조명 시스템 선택 시 구매가능
공통	스마트홈 연계 조명 시스템	84A	거실/주방/복도 조명 다운라이트 특화+거실 다운라이트 디밍 제어시스템(12단계 밝기 조절) +거실 커튼박스 간접조명+침실 디밍 제어시스템(12단계 색온도, 밝기 조절)+욕실 센서미등 겸용 다운라이트+거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침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4,770,000	-
	주방 마그네틱 트랙조명		마그네틱 트랙조명	1,340,000	※ 스마트홈 연계 조명 시스템 선택 시 구매가능
공통	스마트홈 연계 조명 시스템	84B	거실/주방/복도 조명 다운라이트 특화+거실 다운라이트 디밍 제어시스템(12단계 밝기 조절) +거실 커튼박스 간접조명+침실 디밍 제어시스템(12단계 색온도, 밝기 조절)+욕실 센서미등 겸용 다운라이트+거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침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4,860,000	-
	주방 마그네틱 트랙조명		마그네틱 트랙조명	1,530,000	※ 스마트홈 연계 조명 시스템 선택 시 구매가능

■ 욕실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목	주택형	구성	판매가격	비고
공통	복합환풍기	전타입	전체 욕실 적용	1,300,000	-
공통	비데일체형 양변기	전타입	전체 욕실 적용	1,200,000	-

■ 다용도실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목	주택형	구성	판매가격	비고
공통	탄성코트	59A	세라믹 탄성코트	670,000	-
		59B	세라믹 탄성코트	710,000	
		74A	세라믹 탄성코트	700,000	
		74B	세라믹 탄성코트	780,000	
		84A	세라믹 탄성코트	830,000	
		84B	세라믹 탄성코트	840,000	
공통	손빨래 하부장	84A	손빨래 하부장+다용도실 하부장 수전(국산)+MMA/샌디드구스	1,440,000	-

■ 빌트인 가전 업그레이드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목	주택형	구성	판매가격	비고
공통	의류관리기	전 타입	LG 스타일러 5벌(SC5MBR53)	1,800,000	※ 의류관리기형 불박이장 선택 시 구매가능
공통	빌트인드레스룸제습기(택1)	74B	D-클로젯 브리즈(단독형)	1,500,000	※ 불박이장 연계형의 경우 '드레스룸 불박이장' 선택 시 구매가능
			D-클로젯 브리즈(불박이장 연계형)	1,800,000	
		84A	D-클로젯 브리즈(단독형)	1,500,000	
			D-클로젯 브리즈(불박이장 연계형)	1,800,000	
		84B	D-클로젯 브리즈(단독형)	1,500,000	
			D-클로젯 브리즈(불박이장 연계형)	1,800,000	
공통	실별환기·공기청정시스템	59A	D-에어플래너+침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4,980,000	※ 스마트홈 연계조명시스템 미선택 시
			D-에어플래너+침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4,980,000	
			D-에어플래너+침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4,980,000	
			D-에어플래너+침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4,980,000	
			D-에어플래너+침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4,980,000	
			D-에어플래너+침실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위치	4,980,000	
		59B	D-에어플래너	4,830,000	※ 스마트홈 연계조명시스템 선택 시
			D-에어플래너	4,830,000	
			D-에어플래너	4,830,000	
			D-에어플래너	4,830,000	
			D-에어플래너	4,830,000	
			D-에어플래너	4,830,000	
			D-에어플래너	4,830,000	
			D-에어플래너	4,830,000	
공통	주방 저소음 렌지후드	전 타입	D-사일런트 후드	780,000	-
공통	빌트인 식기세척기	전 타입	디오스14인용(DUE5NSE)+콘센트	1,650,000	-
공통	빌트인 인덕션(택1)	전 타입	삼성 인덕션 3구(NZ63B5056AK)	950,000	-
			LG 인덕션 3구(BEI3ASB4BI)	1,000,000	
			나비엔 매직 보더리스 인덕션 4구(ERI-7704)	1,950,000	
공통	빌트인 전기오븐(택1)	전 타입	LG 디오스 광파오븐(MZ385EBTA)	480,000	※아일랜드장 선택 시 구매가능
			나비엔 매직 컨벡션 스팀 오븐(EOB-5004)	650,000	
			삼성 비스포크 오븐(NQ50T8539BK)	900,000	
미니멀	빌트인냉장고(택1)	59A	삼성비스포크1도어변온고+냉장고+김치냉장고 RZ24C5(9/8)G0AP(Satin)+RR40C7(9/8)95AP(Satin)+RQ34C7(9/8)45AP(Satin) +가전맞춤형냉장고장(PET)+인출식수납형키큰장(PET)	7,670,000	※ 냉장고장 선택 시 구매 가능 ※ 빌트인냉장고 품목은 택1이며, 구성 및 디자인/위치/색상변경불가 ※ 빌트인냉장고가전 판매가격에는 가전맞춤형냉장고장 설치시 증가금액 포함 ※ 가전맞춤형냉장고장은 평형별, 가전별로 디자인 상세 스펙이 상이하여 판매시 별도안내
			LG오브제4도어냉장고+3도어김치냉장고 M62BAAA332(G)+Z334AAA151(G)+가전맞춤형냉장고장(PET)+인출식수납형키큰장(PET)	8,790,000	
		59B	삼성비스포크1도어변온고+냉장고+김치냉장고 RZ24C5(9/8)G0AP(Satin)+RR40C7(9/8)95AP(Satin)+RQ34C7(9/8)45AP(Satin) +가전맞춤형냉장고장(PET)+선반수납형키큰장(PET)	7,820,000	
			LG오브제4도어냉장고+3도어김치냉장고 M62BAAA332(G)+Z334AAA151(G)+가전맞춤형냉장고장(PET)+인출식수납형키큰장(PET)	7,930,000	
		74A	삼성비스포크1도어변온고+냉장고+김치냉장고 RZ24C5(9/8)G0AP(Satin)+RR40C7(9/8)95AP(Satin)+RQ34C7(9/8)45AP(Satin) +가전맞춤형냉장고장(PET)+인출식수납형키큰장(PET)	8,820,000	
			LG오브제4도어냉장고+3도어김치냉장고 M62BAAA332(G)+Z334AAA151(G)+가전맞춤형냉장고장(PET)+인출식수납형키큰장(PET)	9,940,000	
		74B	삼성비스포크1도어변온고+냉장고+김치냉장고 RZ24C5(9/8)G0AP(Satin)+RR40C7(9/8)95AP(Satin)+RQ34C7(9/8)45AP(Satin) +가전맞춤형냉장고장(PET)+인출식수납형키큰장(PET)	7,680,000	
			LG오브제4도어냉장고+3도어김치냉장고 M62BAAA332(G)+Z334AAA151(G)+가전맞춤형냉장고장(PET)+인출식수납형키큰장(PET)	8,800,000	
		84A	삼성비스포크1도어변온고+냉장고+김치냉장고 RZ24C5(9/8)G0AP(Satin)+RR40C7(9/8)95AP(Satin)+RQ34C7(9/8)45AP(Satin) +가전맞춤형냉장고장(PET)+인출식수납형키큰장(PET)	7,670,000	
			LG오브제4도어냉장고+3도어김치냉장고 M62BAAA332(G)+Z334AAA151(G)+가전맞춤형냉장고장(PET)+인출식수납형키큰장(PET)	8,770,000	

		84B	삼성비스포크1도어변온고+냉장고+김치냉장고 RZ24C5(9/8)G0AP(Satin)+RR40C7(9/8)95AP(Satin)+RQ34C7(9/8)45AP(Satin) +가전맞춤형냉장고장(PET)+인출식수납형키큰장(PET)	7,680,000	
			LG오브제4도어냉장고+3도어김치냉장고 M62BAAA332(G)+Z334AAA151(G)+가전맞춤형냉장고장(PET)+인출식수납형키큰장(PET)	8,800,000	
내추럴 클래식	빌트인냉장고(택1)	59A	삼성비스포크1도어변온고+냉장고+김치냉장고 RZ24C5(9/8)G0AP(Satin)+RR40C7(9/8)95AP(Satin)+RQ34C7(9/8)45AP(Satin) +가전맞춤형냉장고장(수입푸트라PET)+인출식수납형키큰장(수입푸트라PET)	8,310,000	※ 디 선택션 인테리어 스타일 선택 시 구매 가능  ※ 빌트인냉장고 품목은 택1이며, 구성 및 디자인/위치/색상변경불가  ※ 빌트인냉장고가전 판매가격에는 가전맞춤형냉장고장 설치시 증가금액 포함  ※ 가전맞춤형냉장고장은 평형별, 가전별로 디자인 상세 스펙이 상이하여 판매시 별도안내
			LG오브제4도어냉장고+3도어김치냉장고 M62BAAA332(G)+Z334AAA151(G)+가전맞춤형냉장고장(수입푸트라PET) +인출식수납형키큰장(수입푸트라PET)	9,440,000	
		59B	삼성비스포크1도어변온고+냉장고+김치냉장고 RZ24C5(9/8)G0AP(Satin)+RR40C7(9/8)95AP(Satin)+RQ34C7(9/8)45AP(Satin) +가전맞춤형냉장고장(수입푸트라PET)+선반수납형키큰장(수입푸트라PET)	8,550,000	
			LG오브제4도어냉장고+3도어김치냉장고 M62BAAA332(G)+Z334AAA151(G)+가전맞춤형냉장고장(수입푸트라PET) +인출식수납형키큰장(수입푸트라PET)	8,580,000	
		74A	삼성비스포크1도어변온고+냉장고+김치냉장고 RZ24C5(9/8)G0AP(Satin)+RR40C7(9/8)95AP(Satin)+RQ34C7(9/8)45AP(Satin) +가전맞춤형냉장고장(수입푸트라PET)+인출식수납형키큰장(수입푸트라PET)	9,620,000	
			LG오브제4도어냉장고+3도어김치냉장고 M62BAAA332(G)+Z334AAA151(G)+가전맞춤형냉장고장(수입푸트라PET) +인출식수납형키큰장(수입푸트라PET)	10,750,000	
		74B	삼성비스포크1도어변온고+냉장고+김치냉장고 RZ24C5(9/8)G0AP(Satin)+RR40C7(9/8)95AP(Satin)+RQ34C7(9/8)45AP(Satin) +가전맞춤형냉장고장(수입푸트라PET)+인출식수납형키큰장(수입푸트라PET)	8,340,000	
			LG오브제4도어냉장고+3도어김치냉장고 M62BAAA332(G)+Z334AAA151(G)+가전맞춤형냉장고장(수입푸트라PET) +인출식수납형키큰장(수입푸트라PET)	9,460,000	
		84A	삼성비스포크1도어변온고+냉장고+김치냉장고 RZ24C5(9/8)G0AP(Satin)+RR40C7(9/8)95AP(Satin)+RQ34C7(9/8)45AP(Satin) +가전맞춤형냉장고장(수입푸트라PET)+인출식수납형키큰장(수입푸트라PET)	8,320,000	
			LG오브제4도어냉장고+3도어김치냉장고 M62BAAA332(G)+Z334AAA151(G)+가전맞춤형냉장고장(수입푸트라PET) +인출식수납형키큰장(수입푸트라PET)	9,420,000	
		84B	삼성비스포크1도어변온고+냉장고+김치냉장고 RZ24C5(9/8)G0AP(Satin)+RR40C7(9/8)95AP(Satin)+RQ34C7(9/8)45AP(Satin) +가전맞춤형냉장고장(수입푸트라PET)+인출식수납형키큰장(수입푸트라PET)	8,340,000	
			LG오브제4도어냉장고+3도어김치냉장고 M62BAAA332(G)+Z334AAA151(G)+가전맞춤형냉장고장(수입푸트라PET) +인출식수납형키큰장(수입푸트라PET)	9,460,000	
블랑 클래식	빌트인냉장고(택1)	59A	삼성비스포크1도어변온고+냉장고+김치냉장고 RZ24C5(9/8)G0AP(Satin)+RR40C7(9/8)95AP(Satin)+RQ34C7(9/8)45AP(Satin) +가전맞춤형냉장고장(수입푸트라PET)+인출식수납형키큰장(수입푸트라PET)	8,530,000	※ 디 선택션 인테리어 스타일 선택 시 구매 가능  ※ 빌트인냉장고 품목은 택1이며, 구성 및 디자인/위치/색상변경불가  ※ 빌트인냉장고가전 판매가격에는 가전맞춤형냉장고장 설치시 증가금액 포함  ※ 가전맞춤형냉장고장은 평형별, 가전별로 디자인 상세 스펙이 상이하여 판매시 별도안내
			LG오브제4도어냉장고+3도어김치냉장고 M62BAAA332(G)+Z334AAA151(G)+가전맞춤형냉장고장(수입푸트라PET) +인출식수납형키큰장(수입푸트라PET)	9,690,000	
		59B	삼성비스포크1도어변온고+냉장고+김치냉장고 RZ24C5(9/8)G0AP(Satin)+RR40C7(9/8)95AP(Satin)+RQ34C7(9/8)45AP(Satin) +가전맞춤형냉장고장(수입푸트라PET)+선반수납형키큰장(수입푸트라PET)	8,810,000	
			LG오브제4도어냉장고+3도어김치냉장고 M62BAAA332(G)+Z334AAA151(G)+가전맞춤형냉장고장(수입푸트라PET) +인출식수납형키큰장(수입푸트라PET)	8,810,000	
		74A	삼성비스포크1도어변온고+냉장고+김치냉장고 RZ24C5(9/8)G0AP(Satin)+RR40C7(9/8)95AP(Satin)+RQ34C7(9/8)45AP(Satin) +가전맞춤형냉장고장(수입푸트라PET)+인출식수납형키큰장(수입푸트라PET)	9,880,000	
			LG오브제4도어냉장고+3도어김치냉장고 M62BAAA332(G)+Z334AAA151(G)+가전맞춤형냉장고장(수입푸트라PET) +인출식수납형키큰장(수입푸트라PET)	11,030,000	
		74B	삼성비스포크1도어변온고+냉장고+김치냉장고 RZ24C5(9/8)G0AP(Satin)+RR40C7(9/8)95AP(Satin)+RQ34C7(9/8)45AP(Satin) +가전맞춤형냉장고장(수입푸트라PET)+인출식수납형키큰장(수입푸트라PET)	8,560,000	

		LG오브제4도어냉장고+3도어김치냉장고 M62BAAA332(G)+Z334AAA151(G)+가전맞춤형냉장고장(수입푸트라PET) +인출식수납형키큰장(수입푸트라PET)	9,710,000	
	84A	삼성비스포크1도어변온고+냉장고+김치냉장고 RZ24C5(9/8)G0AP(Satin)+RR40C7(9/8)95AP(Satin)+RQ34C7(9/8)45AP(Satin) +가전맞춤형냉장고장(수입푸트라PET)+인출식수납형키큰장(수입푸트라PET)	8,530,000	
		LG오브제4도어냉장고+3도어김치냉장고 M62BAAA332(G)+Z334AAA151(G)+가전맞춤형냉장고장(수입푸트라PET) +인출식수납형키큰장(수입푸트라PET)	9,670,000	
	84B	삼성비스포크1도어변온고+냉장고+김치냉장고 RZ24C5(9/8)G0AP(Satin)+RR40C7(9/8)95AP(Satin)+RQ34C7(9/8)45AP(Satin) +가전맞춤형냉장고장(수입푸트라PET)+인출식수납형키큰장(수입푸트라PET)	8,560,000	
		LG오브제4도어냉장고+3도어김치냉장고 M62BAAA332(G)+Z334AAA151(G)+가전맞춤형냉장고장(수입푸트라PET) +인출식수납형키큰장(수입푸트라PET)	9,710,000	

■ 추가선택품목(Ⅲ) 납부일정

계약금(10%)	중도금(30%)	잔금(60%)
계약 시	2027.03.26.	입주 시(입주지정기간 내)

■ 추가선택품목(Ⅲ) 공급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비용(계약금, 중도금, 잔금)	우리은행	1005-204-903504 (별도의 가상계좌가 부여될 예정이므로, 계약 전 가상계좌번호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디엘이앤씨(주)

※ 상기 계좌와 아파트 공급대금 및 추가선택품목(I), (Ⅱ)와도 공사비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입금 시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비용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세대별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상기 모계좌로 관리됩니다.

※ 각 회차별 납부 및 납부금액에 대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Ⅲ) 비용은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주택전시관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납부일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 시 동(3자리), 호수(4자리)와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101호 홍길동의 경우, 입금자명을 '1010101홍길동'으로 기재하여야 함)

※ 추가선택품목(Ⅲ) 비용은 추가선택품목(Ⅲ) 계약체결 시 계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은 지정일에 납부하며, 입주 시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또는 판매주체에서 제휴 신용카드사를 통해 결제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합니다. (신용카드결제 서비스 준비 중으로 서비스 제공이 취소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결제는 추가선택품목(Ⅲ) 납부시에만 가능하며,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한 제휴 신용카드사 및 제반되는 결제조건, 수수료 등에 대한 설명은 추후 안내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시공사 디엘이앤씨(주)와 고객 간 직접계약 및 설치가 진행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판매금액에는 기본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설치공사는 공개된 품목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위약금 등에 대한 상세내용은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기재하고 체결하오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설치 시점에 이르러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단종(성능 개선, 디자인 변경 등의 사유) 시 동 제조사의 동급 이상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조사의 제품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동급 이상의 타 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 시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으며, 변경 제품을 확정하기 전에 변경 사유 및 내용을 계약자에게 통보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상품 구성, 제품 모델, 디자인(색상포함), 설치 위치, 판매 금액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공정상(발주 및 설치)의 사유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공급 계약이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스타일 선택 옵션은 인테리어 스타일의 통일성을 위하여 개별 분리 판매 및 스타일 간 교차 선택이 불가하며, 스타일별 디자인(색상 포함), 재질 및 구성은 상이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스타일 옵션 선택 시, 스타일과 연계된 개별 품목은 동일한 스타일 범위 내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전, 가구, 조명, 스위치 등)의 디자인(색상 포함), 사양, 위치, 설치 방향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주방 상판/벽체, 거실 및 복도의 벽체, 마루 등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따라 두께 및 설치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욕실 배기팬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복합 환풍기 내 욕실팬 기능 있음)

• 욕실 복합 환풍기는 모드에 따른 운전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의 리모컨은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는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의 출시, 시장 상황의 변화 등 당초 계약모델의 타 모델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풍기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천장 내부 설비, 등기구의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손빨래 하부장 미선택 시, 별도의 급수 또는 배수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디사일런트후드(렌지후드) 선택 시 렌지후드 상부장 내부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디사일런트후드(렌지후드) 선택 유무와 상관없이 상부장은 수납 목적이 아닌 후드 장비 및 자동식 소화기 등이 설치되는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빌트인 전기쿡탑 선택 유무에 상관없이 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기존 위치에 설치됩니다.
- D에어플래너(실별환기) 가동 시 각 실내 환기구를 통해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운전 모드별 소음 및 진동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D에어플래너(실별환기) 실내 환기구의 위치 및 수량은 성능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D에어플래너(실별환기) 장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일부 차단하는 청정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2회 이상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 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D클로젯브리즈(빌트인제습기)는 운전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D클로젯브리즈(빌트인제습기)는 제습 운전 시 소자의 재생을 위해 주기적으로 욕실 환기와 연동되어 욕실 배기팬이 운전되며 이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확인하시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D클로젯브리즈(빌트인제습기)는 환기 운전 시 욕실 환기와 연동되어 욕실 배기팬이 운전되며 이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확인하시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D클로젯브리즈(빌트인제습기)의 리모컨은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D클로젯브리즈(빌트인제습기)는 공간 면적에 따라 제습 효과 및 운전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D클로젯브리즈(빌트인제습기)는 선택 시 장비 및 배관에 의해 환기디퓨저, 스프링클러, 조명기구 등의 위치가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 D클로젯브리즈(빌트인제습기)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천장 내부 설비, 등기구의 위치 등 시공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D클로젯브리즈(빌트인제습기)는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의 출시, 시장 상황의 변화 등 당초 계약모델의 타 모델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가전과 불박이가구 설치 시 설치 부위의 노출되지 않는 가구 천장 및 바닥, 후면 및 측면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격 산정 시 해당하는 설치 비용은 감액하여 책정하였습니다.
- 불박이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빌트인가전, 욕실장, 욕실거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불박이가구 옵션의 가구 수납형태 및 내부 구성과 규격은 주택형별, 해당세대 단지배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가구의 디자인, 내부구성, 하드웨어 상세 등은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침실 내 창호 커튼박스는 불박이장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와의 간섭으로 인해 커튼박스 크기,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픈형 프리미엄 신발장에 설치되는 오픈장 간접조명은 천장 센서등과 연동되어 점등/소등되며 별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 침실 불박이장 옵션 선택 시 가려지는 벽체에 설치되는 콘센트 및 통신 포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데스크형 불박이장 선택 시 가구 상판에만 매입형 콘센트가 설치되며 데스크 하부 벽에는 콘센트와 인터넷 포트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니 사용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신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1을 제외한 침실2, 침실3 불박이장(데스크형 포함) 선택 시 스타일과 상관없이 미니멀 스타일로 적용됩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은 자체특성상 시공 이음매가 노출되며, 이음면의 위치는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됩니다.
- 엔지니어드스톤 마감은 인테리어 스타일에 따라 상이한 디자인이 설치되며, 엔지니어드 스톤 개별 선택은 불가 하므로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피니티 도어 상부 디테일이나 몰딩 마감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목창호, 인피니티도어에 손끼임 방지 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상세 스펙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피니티 도어 선택 시 욕실2도어 마감재는 디자인월과 패턴이 동일한 인테리어 시트지로 적용됩니다.
- 가구류(시스템가구 등)는 과도한 하중 적재 시 처짐이 생기거나 손상될 수 있으니,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스마트홈 연계 조명시스템에 포함된 거실 및 침실의 디밍 제어시스템은 입주 후 조명기구 및 스위치 교체 시 기능의 제한이 발생합니다.
- 스마트홈 연계 조명시스템 선택 시 다운라이트가 소형화되고 거실 직부등이 없으므로 기본형보다 어둡게 느껴질 수 있으며, 조명 특성상 하부에서 직접 광원을 바라볼 경우 눈부심이 있습니다.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홈 연계 조명시스템 선택 시 거실 조명제어 장치(릴레이)가 천장 내부에 설치되며,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구가 현관 팬트리 및 발코니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홈 조명 연계시스템 선택 시 거실 커튼박스 간접조명은 별도의 등박스 없이 커튼박스 내부에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스마트홈 조명 연계시스템 선택 시 욕실 내 조명 1개소는 센서 미등 겸용 다운라이트로 변경되며 스위치 점등 시 일반 조명과 동일하지만 스위치 소등 시 센서 기능을 통해 미등이 점등됩니다.
- 마그네틱 트랙조명 선택 시 설치되는 트랙은 전용 규격이므로 시중에서 구매하는 일반 트랙용 조명 모듈이 호환되지 않습니다.
- 마그네틱 트랙조명 선택 시 제공되는 조명 모듈은 타입별로 수량이 상이할 수 있으며, 조명 특성 상 기본형(다운라이트)보다 더 낮은 평균 조도로 연출될 수 있습니다.
- 스타일 선택 및 가구, 가전 선택 여부에 따라 설치되는 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천장기구(조명포함)의 규격, 수량,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1 스마트 스위트룸 선택 시 전동커튼 레일만 제공되며 커튼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헤드보드 통합 컨트롤러에 열림/닫힘 기능은 제공되나 멈춤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침실1 스마트 스위트룸 서랍장 후면의 헤드보드에 점검구가 설치되며 통합 제어를 위한 통신 장비가 가구 내부에 설치됩니다.
- 아일랜드장 가구에 연결된 전선관 또는 케이블에 의해 위치 이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 삼성 비스포크, LG 오브제 선택 시 안내한 바와 같이 세트 구성된 상품으로 판매하며, 상품의 조합, 디자인(색상 포함), 설치 위치, 결합 가구의 구성은 주택형 별로 상이할 수 있고 안내한 내용 외 변경 신청은 불가합니다.
- 삼성 비스포크, LG 오브제 설치 시 해당세대가 대칭세대인 경우 구성품목의 설치위치가 좌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삼성 비스포크, LG 오브제 설치 시 타입에 따라 결합되는 가구가 상이하며, 공급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전기쿡탑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하는 3구 가스쿡탑은 설치 및 제공되지 않으며, 해당금액은 판매금액에서 차감 정산하였습니다.
- 빌트인 전기쿡탑 선택 유무에 상관없이 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기존 위치에 설치됩니다.
- 빌트인 전기오븐은 아일랜드장 선택 시 구매 가능합니다.
- 식기세척기 미선택 시 해당 위치에 콘센트가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 입주 후 개별 시공하는 품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공사와 무관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본 아파트의 시공사에게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판매가격은 판매시점의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후 원가 변동에 따른 감액 및 증액분은 반영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차액 정산, 감액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사이버 주택전시관 및 홍보물상의 이미지와 실제 입주 시 느끼는 분위기, 마감색상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라 인접하는 가구, 마감재, 벽체, 몰딩, 걸레받이, 커튼박스, 등기구, 스위치 및 콘센트 등의 위치와 수량, 형태가 홈페이지 홍보물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마감공사에 포함된 제품(빌트인)의 경우 공중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시공사의 담보책임이 인정되며, 완제품으로 시공된 제품의 개별성능 관련 하자 발생 시 제조사 보증 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에 한계가 있고, 전품목 전시 불가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체결 시 상세한 설명과 확인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미기재된 내용은 추후 추가선택품목 계약 시 안내 후 계약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주요내용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535,126,345,000원	제 01212026-101-0001900호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홀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익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주차장 주차대수

- 설치대수 : 총 2,196대(공동주택 2,155대, 근린생활시설 10대, 판매시설 31대)
- 1단지(3-1BL) : 총 1,224대(공동주택 1,214대, 근린생활시설 10대) / 2단지(3-2,3-3BL) : 총 972대(공동주택 941대, 판매시설 31대)
- ※ 주택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여건 변화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주차대수 및 주차단위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높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9의2호

주택구분	주차장 차로의 폭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1단지(3-1BL)	6.0m이상	2.3m이상(주차면 2.1m), (지하2층 택배차 통과구간 2.7m)	2.3m이상 (지하2층 택배차 통과구간 2.7m)
2단지(3-2,3-3BL)	6.0m이상	2.3m이상(주차면 2.1m), (지하1층 택배차 통과구간 2.7m)	2.3m이상 (지하1층 택배차 통과구간 2.7m)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

구분	등급
내진중요도 I	VII - 0.204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동등급(MMI등급, I~VII)으로 표기

■ 부대복리시설

- 1단지(3-1BL) : 올데이다이닝, 사우나, 드포엠 카페, 피트니스, G.X룸, 어린이집, 키즈스테이션,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룸, 커뮤니티 라운지, 키즈 라운지, 프라이빗 오피스룸, 스터디 라운지, 시니어 라운지, 미니집, 멀티룸(주민회의실), 생활지원센터 등
- 2단지(3-2BL) : 올데이다이닝, 건식 사우나, 라운지 카페(작은 도서관), 피트니스, P.T룸, 어린이집, 키즈스테이션,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룸, 커뮤니티 라운지, 키즈 라운지, 프라이빗 오피스룸, 시니어 라운지, 스포츠코트, 멀티룸(주민회의실), 생활지원센터 등
- 2단지(3-3BL) : 게스트하우스
- 부대복리시설의 시설들은 계획 변경에 따라 주택전시관 내 모형도 및 CG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실외)은 조경 및 시설물 계획 변경에 따라 주택전시관 내 모형도 및 CG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건축감리	통신/소방감리	전기감리
회사명	(주)팜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세정이에프씨	(주)한성기술단
감리금액	4,331,074,000원	704,000,000원	1,107,291,480원
사업자등록번호	513-81-11531	202-81-50221	224-81-3671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및 시행자	시공사	
상호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디엘이앤씨 주식회사	롯데건설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121171-0002603	110111-7736808	110111-0014764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563, 2층(소사동, 수협빌딩)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65, 에이동 (마곡동, 원그로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29 (잠원동)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주택전시관에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함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대출안내

- 중도금 납부 기일 및 납부금에 대한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지정납부일 이전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여도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모집공고일 2026.04.23. 현재 비규제 지역에서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분양하는 단지로, 사업주체는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 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 정부정책으로 본 단지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중도금 대출 가능 금액” 이 축소 될 수도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중도금 대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 : 본 사업은 사업주체가 중도금대출 이자후불제로 대출기관 알선할 예정이며,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입주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에서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계약자의 개인 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 가능하나, 용자금액은 향후 정부 정책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금액을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5%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수수료,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금액 납부 조건에 따라 직접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 할수 없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사업주체, 시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대출 이자후불제에 상응하는 조건을 사업주체,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사업주체, 시공사는 대출은행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계약자는 사업주체, 시공사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중 선 도래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예정자의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입주예정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납부기한 내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상담사는 분양 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앞당겨지거나 늦춰지는 경우) 중도금 대출이자 납부는 대출개시일 부터 변경된 대납종료일(입주지정기간 직전 대출이자 납부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의 경우 사업주체가 부도 또는 파산 시 사업주체가 납부 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2곳 이상의 금융기관이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금리는 동일한 기준금리+가산금리의 금융권을 알선할 예정이나 은행별 금리적용기준 차이로 총 발생이자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은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까지입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이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보증서 발급 불가 등) 또는 제반사정(관련 법률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금융시장 변화 등)에 따라 불가 또는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 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대출 불가 또는 대출한도 축소를 사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실행 후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거래자 등)으로 인해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지 등에 따라 분양대금이 완납 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 한도는 계약자 사정,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 종류 등에 따라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계약자는 사전에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일정은 정부 정책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에 따릅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인지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전 별도 안내 예정임.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제1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세액(균등 납부)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발코니확장계약서와 추가선택품목계약서 II, III는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제1조 제2항에 의거 시공사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각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세액(각각 납부)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or 시공사 부담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우체국, 은행)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1577-55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여야 함.

####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별표3에 의거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 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 연체료 등)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 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 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 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매자간 작성(합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분양권 전매 금액이 최초 체결한 분양계약 상의 분양대금과 상이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양도인 및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을 제한합니다.
- 불법청약 등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당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분양권 매수자는 이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기타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해당 세대의 동의를 얻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샘플하우스(Mock up 세대)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마감재의 파손, 훼손에 대해서는 Mock up 세대 사용 이후 원상복구(보수 또는 재시공)를 하고 수분양자에게 인도하기로 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타사 또는 시공사의 타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복리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주택전시관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입주자 사전방문 실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에 의한 규정 및 「주택법」 제48조의2,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입주자 사전방문 일정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입주예정일 : 2029년 10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위탁관리업체에게 일정 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 기간(추후 별도 안내) 종료일 또는 실입주일(열쇠 수령일) 중 빠른 날로부터 잔금완납이나 입주 및 소유권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중 선 도래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배상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할 경우,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입주지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장마, 폭우, 폭설 등), 전염병 발생, 전쟁, 내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또는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의 변경, 조기준공,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굴, 정부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의 사유에 따라 앞당겨지거나 지연되는 등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분양계약서 등에 따라 입주예정일이 통보된 경우 입주예정일의 변경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으며,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주택구분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1단지 (3-1BL)	<p>■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lt;개정 2016. 7. 27.&gt;</p> <p><b>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b></p> <p>1. 공동주택: 소사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3-1BL) 2. 신청자: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3. 대지위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일원 4. 성능 등급</p> <p>가. 소용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광합성률 차단성능</td><td>★★★★</td></tr> <tr><td>2. 광합성률 차단성능</td><td>★★</td></tr> <tr><td>3. 차열 및 열차폐 성능</td><td>★★★★</td></tr> <tr><td>4. 고효율외도열 차단성능</td><td>★★</td></tr> <tr><td>5. 환기성능</td><td>★★</td></tr> </table> <p>나. 구조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내구성</td><td>★★</td></tr> <tr><td>2. 가변성</td><td>★★</td></tr> <tr><td>3. 수리용이성 전후부분</td><td>★★</td></tr> <tr><td>4. 수리용이성 중후부분</td><td>★</td></tr> </table> <p>다. 환경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기준 대비 생태학적 가치</td><td>★★★★</td></tr> <tr><td>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td><td>★★★★</td></tr> <tr><td>3. 토공사 발생토양 최소화</td><td>★★★★</td></tr> <tr><td>4. 일출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td><td>★★★★</td></tr> <tr><td>5. 에너지 성능</td><td>★★</td></tr> <tr><td>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침 설치</td><td>★</td></tr> <tr><td>7. 신·재생에너지 이용</td><td>★</td></tr> <tr><td>8. 차탄소 에너지저장 기술의 적용</td><td>★★</td></tr> <tr><td>9. 소문통 보호를 위한 녹지용량의 사용 금지</td><td>★★</td></tr> <tr><td>10. 환경친화적 자재(FCP)의 사용</td><td>★★</td></tr> <tr><td>11. 차탄소 자재의 사용</td><td>★★</td></tr> <tr><td>12. 자갈순환 자재의 사용</td><td>★★</td></tr> <tr><td>13. 수해예방 자갈 차폐기 사용</td><td>★★</td></tr> <tr><td>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td><td>★★</td></tr> <tr><td>15. 재활용가능자재의 보급사업 설치</td><td>★★★★</td></tr> <tr><td>16. 재활용률</td><td>★★★★</td></tr> <tr><td>17. 재활용 및 재활용가능 자재 이용</td><td>★★</td></tr> <tr><td>18. 재활용 기기 사용</td><td>★★★★</td></tr> <tr><td>19. 물 사용량 모니터링</td><td>★</td></tr> </table> <p>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단차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td><td>★★★★</td></tr> <tr><td>2. 대중교통의 근접성</td><td>★★★★</td></tr> <tr><td>3. 차전자주차량 및 주차기타도로의 적합성</td><td>★★★★</td></tr> <tr><td>4. 생활환경시설의 접근성</td><td>★★★★</td></tr> <tr><td>5. 근접한 공공시설의 계획</td><td>★★★★</td></tr> <tr><td>6. 운동·유치권리 분석 및 대안책 제공</td><td>★★★★</td></tr> <tr><td>7. 사용자 제능률 제공</td><td>★★★★</td></tr> <tr><td>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td><td>★</td></tr> <tr><td>9. 단위세대별 사용의 적절성</td><td>★</td></tr> <tr><td>10. 공용공간내의 사회적 약자배려</td><td>★</td></tr> <tr><td>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td><td>★★★★</td></tr> <tr><td>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td><td>★</td></tr> <tr><td>13. 음향환경의 품질시스템</td><td>★★</td></tr> <tr><td>14. 방화안전 훈련도</td><td>★★</td></tr> </table> <p>마. 환경·소방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감지 및 경보설비</td><td>★★</td></tr> <tr><td>2. 화재예방</td><td>★★</td></tr> <tr><td>3. 내화성능</td><td>★</td></tr> <tr><td>4. 수평적난방기</td><td>★★★★</td></tr> <tr><td>5. 화재 및 화재연연배</td><td>★★★★</td></tr> <tr><td>6. 피난설비</td><td>★</td></tr> </table> <p>「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광합성률 차단성능	★★★★	2. 광합성률 차단성능	★★	3. 차열 및 열차폐 성능	★★★★	4. 고효율외도열 차단성능	★★	5. 환기성능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후부분	★★	4. 수리용이성 중후부분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준 대비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발생토양 최소화	★★★★	4. 일출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침 설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차탄소 에너지저장 기술의 적용	★★	9. 소문통 보호를 위한 녹지용량의 사용 금지	★★	10. 환경친화적 자재(FCP)의 사용	★★	11. 차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갈순환 자재의 사용	★★	13. 수해예방 자갈 차폐기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재의 보급사업 설치	★★★★	16. 재활용률	★★★★	17. 재활용 및 재활용가능 자재 이용	★★	18. 재활용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차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차전자주차량 및 주차기타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환경시설의 접근성	★★★★	5. 근접한 공공시설의 계획	★★★★	6. 운동·유치권리 분석 및 대안책 제공	★★★★	7. 사용자 제능률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별 사용의 적절성	★	10. 공용공간내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음향환경의 품질시스템	★★	14. 방화안전 훈련도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화재예방	★★	3. 내화성능	★	4. 수평적난방기	★★★★	5. 화재 및 화재연연배	★★★★	6. 피난설비	★	<p><b>녹색건축 예비인증서</b></p> <p>「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별지 제6호서식) &lt;개정 2017.1.20.&gt;</p> <p>건축물명: 소사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3-1BL) 건축주: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준공(예정)일: 2026년 5월 1일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일원 층수: 지하 3층, 지상 38층 / 997세대 면적: 139,226.640㎡(부지면적: 138,137.715㎡) 건축물의 주변 풍도: 풍동측정용 부속호리사양 설계자: (주)엠엔에이종합건축사사무소</p> <p>인증번호: G-SEED-P-2026-0378-7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유효기간: 2026.04.13 - 사용종결</p> <p>인증등급: 1등급(공동주택)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인증기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유효기간: 2026.04.13 - 사용종결</p> <p>인증등급: 1등급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인증기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유효기간: 2026.04.13 - 사용종결</p>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량 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분야별 평가】</p> <table border="1"> <tr><th>분야</th><th>점수</th></tr> <tr><td>포지티브 및 고품질</td><td>59%</td></tr> <tr><td>에너지 및 환경친화성</td><td>67%</td></tr> <tr><td>재료 및 자재</td><td>65%</td></tr> <tr><td>물순환관리</td><td>43%</td></tr> <tr><td>유지관리</td><td>80%</td></tr> <tr><td>생태환경</td><td>15%</td></tr> <tr><td>실내환경</td><td>62%</td></tr> </table> <p>2026년 4월 13일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분야	점수	포지티브 및 고품질	59%	에너지 및 환경친화성	67%	재료 및 자재	65%	물순환관리	43%	유지관리	80%	생태환경	15%	실내환경	62%	<p>■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별지 제6호서식) &lt;개정 2017.1.20.&gt;</p> <p><b>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b></p> <p>건축물명: 소사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3-1BL) 건축주: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준공(예정)일: 2026년 5월 1일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일원 층수: 지하 3층 / 지상 38층 면적: 139,226.64㎡ 건축물의 주변 풍도: 풍동측정용 부속호리사양 설계자: (주)엠엔에이종합건축사사무소</p> <p>인증번호: 26-주-에-11-0036 평가자: 최선우 인증기관: 한국부동산원 문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사용종결 또는 사용종결 완료</p> <p>인증등급: 1+등급</p> <p>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p> <table border="1"> <tr><th>구분</th><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th><th>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th><th>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kg/㎡·년)</th><th>배출량</th></tr> <tr><td>년량</td><td>0.0</td><td>0.0</td><td>0.0</td><td>0.0</td></tr> <tr><td>난방</td><td>43.0</td><td>82.0</td><td>62.4</td><td>16.9</td></tr> <tr><td>냉방</td><td>30.7</td><td>36.6</td><td>27.1</td><td>7.5</td></tr> <tr><td>조명</td><td>10.0</td><td>7.1</td><td>19.6</td><td>3.3</td></tr> <tr><td>환기</td><td>1.9</td><td>1.9</td><td>5.1</td><td>0.9</td></tr> <tr><td>합계</td><td>83.7</td><td>127.6</td><td>114.2</td><td>28.6</td></tr> </table> <p>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p> <table border="1"> <tr><th>구분</th><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th><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th><th>1차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th><th>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kg/㎡·년)</th></tr> <tr><td>난방</td><td>43.0</td><td>82.0</td><td>62.4</td><td>16.9</td></tr> <tr><td>냉방</td><td>30.7</td><td>36.6</td><td>27.1</td><td>7.5</td></tr> <tr><td>조명</td><td>10.0</td><td>7.1</td><td>19.6</td><td>3.3</td></tr> <tr><td>환기</td><td>1.9</td><td>1.9</td><td>5.1</td><td>0.9</td></tr> <tr><td>합계</td><td>83.7</td><td>127.6</td><td>114.2</td><td>28.6</td></tr> </table> <p>■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조명, 환풍 등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조명, 환풍, 환기시스템에서 또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에서 산출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p> <p>※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 ] 설치된 [ ] 불시차시절만 인증됩니다.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환경 후에 보편성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온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 11조 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건축물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한국부동산원</p>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배출량	년량	0.0	0.0	0.0	0.0	난방	43.0	82.0	62.4	16.9	냉방	30.7	36.6	27.1	7.5	조명	10.0	7.1	19.6	3.3	환기	1.9	1.9	5.1	0.9	합계	83.7	127.6	114.2	28.6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1차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난방	43.0	82.0	62.4	16.9	냉방	30.7	36.6	27.1	7.5	조명	10.0	7.1	19.6	3.3	환기	1.9	1.9	5.1	0.9	합계	83.7	127.6	114.2	28.6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광합성률 차단성능	★★★★																																																																																																																																																																																													
2. 광합성률 차단성능	★★																																																																																																																																																																																													
3. 차열 및 열차폐 성능	★★★★																																																																																																																																																																																													
4. 고효율외도열 차단성능	★★																																																																																																																																																																																													
5. 환기성능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후부분	★★																																																																																																																																																																																													
4. 수리용이성 중후부분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준 대비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발생토양 최소화	★★★★																																																																																																																																																																																													
4. 일출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침 설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차탄소 에너지저장 기술의 적용	★★																																																																																																																																																																																													
9. 소문통 보호를 위한 녹지용량의 사용 금지	★★																																																																																																																																																																																													
10. 환경친화적 자재(FCP)의 사용	★★																																																																																																																																																																																													
11. 차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갈순환 자재의 사용	★★																																																																																																																																																																																													
13. 수해예방 자갈 차폐기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재의 보급사업 설치	★★★★																																																																																																																																																																																													
16. 재활용률	★★★★																																																																																																																																																																																													
17. 재활용 및 재활용가능 자재 이용	★★																																																																																																																																																																																													
18. 재활용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차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차전자주차량 및 주차기타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환경시설의 접근성	★★★★																																																																																																																																																																																													
5. 근접한 공공시설의 계획	★★★★																																																																																																																																																																																													
6. 운동·유치권리 분석 및 대안책 제공	★★★★																																																																																																																																																																																													
7. 사용자 제능률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별 사용의 적절성	★																																																																																																																																																																																													
10. 공용공간내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음향환경의 품질시스템	★★																																																																																																																																																																																													
14. 방화안전 훈련도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화재예방	★★																																																																																																																																																																																													
3. 내화성능	★																																																																																																																																																																																													
4. 수평적난방기	★★★★																																																																																																																																																																																													
5. 화재 및 화재연연배	★★★★																																																																																																																																																																																													
6. 피난설비	★																																																																																																																																																																																													
분야	점수																																																																																																																																																																																													
포지티브 및 고품질	59%																																																																																																																																																																																													
에너지 및 환경친화성	67%																																																																																																																																																																																													
재료 및 자재	65%																																																																																																																																																																																													
물순환관리	43%																																																																																																																																																																																													
유지관리	80%																																																																																																																																																																																													
생태환경	15%																																																																																																																																																																																													
실내환경	62%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배출량																																																																																																																																																																																										
년량	0.0	0.0	0.0	0.0																																																																																																																																																																																										
난방	43.0	82.0	62.4	16.9																																																																																																																																																																																										
냉방	30.7	36.6	27.1	7.5																																																																																																																																																																																										
조명	10.0	7.1	19.6	3.3																																																																																																																																																																																										
환기	1.9	1.9	5.1	0.9																																																																																																																																																																																										
합계	83.7	127.6	114.2	28.6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1차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난방	43.0	82.0	62.4	16.9																																																																																																																																																																																										
냉방	30.7	36.6	27.1	7.5																																																																																																																																																																																										
조명	10.0	7.1	19.6	3.3																																																																																																																																																																																										
환기	1.9	1.9	5.1	0.9																																																																																																																																																																																										
합계	83.7	127.6	114.2	28.6																																																																																																																																																																																										
2단지 (3-2,3-3BL)	<p>■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lt;개정 2016. 7. 27.&gt;</p> <p><b>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b></p> <p>1. 공동주택: 소사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3-2BL, 3-3BL) 2. 신청자: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3. 대지위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일원 4. 성능 등급</p> <p>가. 소용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광합성률 차단성능</td><td>★★★★</td></tr> <tr><td>2. 광합성률 차단성능</td><td>★★</td></tr> <tr><td>3. 차열 및 열차폐 성능</td><td>★★★★</td></tr> <tr><td>4. 고효율외도열 차단성능</td><td>★★</td></tr> <tr><td>5. 환기성능</td><td>★★</td></tr> </table> <p>나. 구조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내구성</td><td>★★</td></tr> <tr><td>2. 가변성</td><td>★★</td></tr> <tr><td>3. 수리용이성 전후부분</td><td>★★</td></tr> <tr><td>4. 수리용이성 중후부분</td><td>★</td></tr> </table> <p>다. 환경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기준 대비 생태학적 가치</td><td>★★★★</td></tr> <tr><td>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td><td>★★★★</td></tr> <tr><td>3. 토공사 발생토양 최소화</td><td>★★★★</td></tr> <tr><td>4. 일출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td><td>★★★★</td></tr> <tr><td>5. 에너지 성능</td><td>★★</td></tr> <tr><td>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침 설치</td><td>★</td></tr> <tr><td>7. 신·재생에너지 이용</td><td>★</td></tr> <tr><td>8. 차탄소 에너지저장 기술의 적용</td><td>★★</td></tr> <tr><td>9. 소문통 보호를 위한 녹지용량의 사용 금지</td><td>★★</td></tr> <tr><td>10. 환경친화적 자재(FCP)의 사용</td><td>★★</td></tr> <tr><td>11. 차탄소 자재의 사용</td><td>★★</td></tr> <tr><td>12. 자갈순환 자재의 사용</td><td>★★</td></tr> <tr><td>13. 수해예방 자갈 차폐기 사용</td><td>★★</td></tr> <tr><td>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td><td>★★</td></tr> <tr><td>15. 재활용가능자재의 보급사업 설치</td><td>★★★★</td></tr> <tr><td>16. 재활용률</td><td>★★★★</td></tr> <tr><td>17. 재활용 및 재활용가능 자재 이용</td><td>★★</td></tr> <tr><td>18. 재활용 기기 사용</td><td>★★★★</td></tr> <tr><td>19. 물 사용량 모니터링</td><td>★</td></tr> </table> <p>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단차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td><td>★★★★</td></tr> <tr><td>2. 대중교통의 근접성</td><td>★★★★</td></tr> <tr><td>3. 차전자주차량 및 주차기타도로의 적합성</td><td>★★★★</td></tr> <tr><td>4. 생활환경시설의 접근성</td><td>★★★★</td></tr> <tr><td>5. 근접한 공공시설의 계획</td><td>★★★★</td></tr> <tr><td>6. 운동·유치권리 분석 및 대안책 제공</td><td>★★★★</td></tr> <tr><td>7. 사용자 제능률 제공</td><td>★★★★</td></tr> <tr><td>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td><td>★</td></tr> <tr><td>9. 단위세대별 사용의 적절성</td><td>★</td></tr> <tr><td>10. 공용공간내의 사회적 약자배려</td><td>★</td></tr> <tr><td>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td><td>★★★★</td></tr> <tr><td>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td><td>★</td></tr> <tr><td>13. 음향환경의 품질시스템</td><td>★★</td></tr> <tr><td>14. 방화안전 훈련도</td><td>★★</td></tr> </table> <p>마. 환경·소방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th>성능항목</th><th>성능등급</th></tr> <tr><td>1. 감지 및 경보설비</td><td>★★</td></tr> <tr><td>2. 화재예방</td><td>★★</td></tr> <tr><td>3. 내화성능</td><td>★</td></tr> <tr><td>4. 수평적난방기</td><td>★★★★</td></tr> <tr><td>5. 화재 및 화재연연배</td><td>★★★★</td></tr> <tr><td>6. 피난설비</td><td>★</td></tr> </table> <p>「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6년 04월 13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광합성률 차단성능	★★★★	2. 광합성률 차단성능	★★	3. 차열 및 열차폐 성능	★★★★	4. 고효율외도열 차단성능	★★	5. 환기성능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후부분	★★	4. 수리용이성 중후부분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준 대비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발생토양 최소화	★★★★	4. 일출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침 설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차탄소 에너지저장 기술의 적용	★★	9. 소문통 보호를 위한 녹지용량의 사용 금지	★★	10. 환경친화적 자재(FCP)의 사용	★★	11. 차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갈순환 자재의 사용	★★	13. 수해예방 자갈 차폐기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재의 보급사업 설치	★★★★	16. 재활용률	★★★★	17. 재활용 및 재활용가능 자재 이용	★★	18. 재활용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차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차전자주차량 및 주차기타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환경시설의 접근성	★★★★	5. 근접한 공공시설의 계획	★★★★	6. 운동·유치권리 분석 및 대안책 제공	★★★★	7. 사용자 제능률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별 사용의 적절성	★	10. 공용공간내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음향환경의 품질시스템	★★	14. 방화안전 훈련도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화재예방	★★	3. 내화성능	★	4. 수평적난방기	★★★★	5. 화재 및 화재연연배	★★★★	6. 피난설비	★	<p><b>녹색건축 예비인증서</b></p> <p>「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별지 제6호서식) &lt;개정 2017.1.20.&gt;</p> <p>건축물명: 소사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3-2BL, 3-3BL) 건축주: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준공(예정)일: 2026년 5월 1일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일원 층수: 지하 3층, 지상 38층 / 652세대 면적: 105,525.550㎡(부지면적: 101,581,195㎡) 건축물의 주변 풍도: 풍동측정용 부속호리사양 설계자: (주)엠엔에이종합건축사사무소</p> <p>인증번호: G-SEED-P-2026-0377-7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유효기간: 2026.04.13 - 사용종결</p> <p>인증등급: 1등급(공동주택)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인증기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유효기간: 2026.04.13 - 사용종결</p> <p>인증등급: 1등급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인증기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유효기간: 2026.04.13 - 사용종결</p>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량 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분야별 평가】</p> <table border="1"> <tr><th>분야</th><th>점수</th></tr> <tr><td>포지티브 및 고품질</td><td>61%</td></tr> <tr><td>에너지 및 환경친화성</td><td>67%</td></tr> <tr><td>재료 및 자재</td><td>68%</td></tr> <tr><td>물순환관리</td><td>37%</td></tr> <tr><td>유지관리</td><td>80%</td></tr> <tr><td>생태환경</td><td>7%</td></tr> <tr><td>실내환경</td><td>62%</td></tr> </table> <p>2026년 4월 13일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p>	분야	점수	포지티브 및 고품질	61%	에너지 및 환경친화성	67%	재료 및 자재	68%	물순환관리	37%	유지관리	80%	생태환경	7%	실내환경	62%	<p>■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정(별지 제6호서식) &lt;개정 2017.1.20.&gt;</p> <p><b>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b></p> <p>건축물명: 소사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3-2BL, 3-3BL) 건축주: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준공(예정)일: 2026년 5월 1일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일원 층수: 지하 3층 / 지상 38층 면적: 105,525.55㎡ 건축물의 주변 풍도: 풍동측정용 부속호리사양 설계자: (주)엠엔에이종합건축사사무소</p> <p>인증번호: 26-주-에-11-0037 평가자: 최선우 인증기관: 한국부동산원 문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사용종결 또는 사용종결 완료</p> <p>인증등급: 1+등급</p> <p>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p> <table border="1"> <tr><th>구분</th><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th><th>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th><th>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kg/㎡·년)</th><th>배출량</th></tr> <tr><td>년량</td><td>0.0</td><td>0.0</td><td>0.0</td><td>0.0</td></tr> <tr><td>난방</td><td>43.0</td><td>81.1</td><td>61.6</td><td>16.7</td></tr> <tr><td>냉방</td><td>30.7</td><td>36.6</td><td>27.1</td><td>7.5</td></tr> <tr><td>조명</td><td>10.0</td><td>7.3</td><td>20.1</td><td>3.4</td></tr> <tr><td>환기</td><td>1.9</td><td>1.9</td><td>5.1</td><td>0.9</td></tr> <tr><td>합계</td><td>83.7</td><td>126.9</td><td>113.9</td><td>28.5</td></tr> </table> <p>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p> <table border="1"> <tr><th>구분</th><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th><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th><th>1차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th><th>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kg/㎡·년)</th></tr> <tr><td>난방</td><td>43.0</td><td>81.1</td><td>61.6</td><td>16.7</td></tr> <tr><td>냉방</td><td>30.7</td><td>36.6</td><td>27.1</td><td>7.5</td></tr> <tr><td>조명</td><td>10.0</td><td>7.3</td><td>20.1</td><td>3.4</td></tr> <tr><td>환기</td><td>1.9</td><td>1.9</td><td>5.1</td><td>0.9</td></tr> <tr><td>합계</td><td>83.7</td><td>126.9</td><td>113.9</td><td>28.5</td></tr> </table> <p>■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조명, 환풍 등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또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에서 산출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p> <p>※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 ] 설치된 [ ] 불시차시절만 인증됩니다.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환경 후에 보편성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온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 11조 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건축물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합니다. 2026년 03월 25일 한국부동산원</p>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배출량	년량	0.0	0.0	0.0	0.0	난방	43.0	81.1	61.6	16.7	냉방	30.7	36.6	27.1	7.5	조명	10.0	7.3	20.1	3.4	환기	1.9	1.9	5.1	0.9	합계	83.7	126.9	113.9	28.5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1차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난방	43.0	81.1	61.6	16.7	냉방	30.7	36.6	27.1	7.5	조명	10.0	7.3	20.1	3.4	환기	1.9	1.9	5.1	0.9	합계	83.7	126.9	113.9	28.5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광합성률 차단성능	★★★★																																																																																																																																																																																													
2. 광합성률 차단성능	★★																																																																																																																																																																																													
3. 차열 및 열차폐 성능	★★★★																																																																																																																																																																																													
4. 고효율외도열 차단성능	★★																																																																																																																																																																																													
5. 환기성능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후부분	★★																																																																																																																																																																																													
4. 수리용이성 중후부분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준 대비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발생토양 최소화	★★★★																																																																																																																																																																																													
4. 일출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침 설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차탄소 에너지저장 기술의 적용	★★																																																																																																																																																																																													
9. 소문통 보호를 위한 녹지용량의 사용 금지	★★																																																																																																																																																																																													
10. 환경친화적 자재(FCP)의 사용	★★																																																																																																																																																																																													
11. 차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갈순환 자재의 사용	★★																																																																																																																																																																																													
13. 수해예방 자갈 차폐기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재의 보급사업 설치	★★★★																																																																																																																																																																																													
16. 재활용률	★★★★																																																																																																																																																																																													
17. 재활용 및 재활용가능 자재 이용	★★																																																																																																																																																																																													
18. 재활용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차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차전자주차량 및 주차기타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환경시설의 접근성	★★★★																																																																																																																																																																																													
5. 근접한 공공시설의 계획	★★★★																																																																																																																																																																																													
6. 운동·유치권리 분석 및 대안책 제공	★★★★																																																																																																																																																																																													
7. 사용자 제능률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별 사용의 적절성	★																																																																																																																																																																																													
10. 공용공간내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음향환경의 품질시스템	★★																																																																																																																																																																																													
14. 방화안전 훈련도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화재예방	★★																																																																																																																																																																																													
3. 내화성능	★																																																																																																																																																																																													
4. 수평적난방기	★★★★																																																																																																																																																																																													
5. 화재 및 화재연연배	★★★★																																																																																																																																																																																													
6. 피난설비	★																																																																																																																																																																																													
분야	점수																																																																																																																																																																																													
포지티브 및 고품질	61%																																																																																																																																																																																													
에너지 및 환경친화성	67%																																																																																																																																																																																													
재료 및 자재	68%																																																																																																																																																																																													
물순환관리	37%																																																																																																																																																																																													
유지관리	80%																																																																																																																																																																																													
생태환경	7%																																																																																																																																																																																													
실내환경	62%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배출량																																																																																																																																																																																										
년량	0.0	0.0	0.0	0.0																																																																																																																																																																																										
난방	43.0	81.1	61.6	16.7																																																																																																																																																																																										
냉방	30.7	36.6	27.1	7.5																																																																																																																																																																																										
조명	10.0	7.3	20.1	3.4																																																																																																																																																																																										
환기	1.9	1.9	5.1	0.9																																																																																																																																																																																										
합계	83.7	126.9	113.9	28.5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1차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난방	43.0	81.1	61.6	16.7																																																																																																																																																																																										
냉방	30.7	36.6	27.1	7.5																																																																																																																																																																																										
조명	10.0	7.3	20.1	3.4																																																																																																																																																																																										
환기	1.9	1.9	5.1	0.9																																																																																																																																																																																										
합계	83.7	126.9	113.9	28.5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 만족제품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평균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한 효율 이상 제품 적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 거실, 침실 등 세대 내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 설치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적용됨.

■ 입주 후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세대내부에 부분적으로 도배가 진행될 경우 시공시차에 따른 도배지의 색상, 질감 등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13 **유의사항**

■ **일반사항**

■ **공통사항**

- 계약서에 표시된 건물의 계약면적, 내부레이아웃 등은 향후에도 설계변경 등에 따라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전항의 사유로 인하여 각종 인쇄물, 주택전시관 등의 표시가 계약체결 이후 일부 변경된 것을 이유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는 불가합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위생기구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주택전시관에 설치되는 위치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팬룸 근처에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펌프실)이나 정화조관리층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저수조, 배수조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차량출입구 위치 및 차로의 너비 등은 교통영향평가로 결정된 사항이며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의 공동주택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방식입니다.
- 본 아파트의 101동에는 임대세대로 계획되어있으며, 부대시설의 사용시 임대세대로 동일하게 사용됨을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 공고문에 명기된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단수 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지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아파트는 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으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공고문의 제반 내용은 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며, 인·허가 승인조건 이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최종 준공 도면에 의하여 시공됩니다.
- 계약 전 단지 여건(기반시설 위치, 분묘, 송전탑 등 혐오시설 유무, 주변 개발현황, 소음, 조망, 일조 등 단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단지 주변현황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법정오차 범위 내 면적 증감에 대한 별도정산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층별 공급금액이 상이합니다.
- 계약일 이후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지정·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도시 기반시설 계획 변경 등으로 규제 내용이 강화되어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단지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배치 및 층별, 향·동·호수별 위치, 주변건물의 신축 등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의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마감자재 등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 내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선형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적합한 세대 내 일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도로, 학교,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 조성계획은 각종 기반시설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아파트 및 단지 공사현장 내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에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특히, 전기 인테리어 공사(배관, 배선, 자재변경)로 인해 홈네트워크 system 연동이 안 될 시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의해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급 계약해지(해제)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 건축허가 승인조건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신속한 하자처리를 목적으로 지하주차장, 동PIT 일부 공간에 관련 자재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1단지(3-1BL)에 근린생활시설과 2단지(3-2,3-3BL)에 판매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은 특성상 위치, 크기, 동선 등의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니어라운지(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은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주거 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 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전기실, 펌프실, 주차장 등)은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됩니다.
-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자리 버림 방식 차이로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에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입주자)는 본 계약 외 발코니 확장 부위에 개인적으로 시공·설치한 바닥 단열 및 마감재, 샷시, 실외기실 루버 등의 제반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녹지, 식재, 시설물 등)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 시공 시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인접 건물에 의해 조망, 일조 등이 침해될 수 있으니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케팅을 위하여 제작된 약도 및 지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위한 제작물이므로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 및 주택전시관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전 본 아파트를 방문하시어 단지 내·외 등의 현황 및 주택전시관을 확인 후 청약하시고, 당첨자는 계약체결 전 당첨된 세대의 현황을 확인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되는 모든 문제는 청약자 및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 임대주택 세대수는 도시계획 변경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각종 홍보물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시어(착공승인도서 비치)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전 반드시 주택전시관 및 사이버 주택전시관 내 실제 건립세대 촬영 영상 및 타입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시고, 실물 견본 세대를 관람 못하고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것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주택전시관은 비치된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서(착공도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인·허가 승인조건 이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최종 준공 도면에 의하여 시공됩니다.
- 각종 홍보물은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서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며, 최종 사용승인도면으로 변경, 법 적용어 사용에 의하여 시공됩니다.
- 모형, 각종 홍보물 상의 계획은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등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조경 식재 및 시설물, 마감사양 및 편의시설 등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며, 사업당사자의 타 현장 및 타사 현장과의 비교를 통한 사항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조경(녹지)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 시공 시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습니다. 근린공원과 연결녹지 내 보도 포장 및 단지내 보도 포장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각종 홍보물 등에 표현된 주동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및 보행 동선, 단지 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조건 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라운지카페(작은도서관), 게스트하우스, 키즈라운지, 시니어라운지(경로당) 등)은 입주 지정기간 경과 후 관리주체에서 운영하게 되며, 운영 시 입주안내문과 주민공동시설 운영 홍보내용을 통해 관리주체가 사전 고 지한 시설 운영시간과 요금표에 따라 공용 또는 개별세대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한 입주민대표회의 구성 등에 따라 운영시간과 요금제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부력방지 공법을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됨에 따라 배수펌프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되며, 지자체 요구로 인해 준공 이후 추가요금이 분담될 수 있습니다.
-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각 동 출입구 계사판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원격검침 설치 시, 검침데이터를 도시가스사에 제공합니다)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원활하고 신속한 하자보수를 위해 CS 사무실을 약 2년간 지하 주차장,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다목적 창고, PIT 일부 등 공용부에 설치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S기간이 완료되면 다목적 창고는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소)로 인계하여 활용방식 등은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결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상에 환기탑이 설치되며, 인접세대, 보행로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청약, 당첨, 입주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서류의 결격, 관계 법령 위반 및 기타)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자산 및 소득 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분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 기간 내에 상기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계약체결 후 발견 시 계약 취소)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하여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시 분양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여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상기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며,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2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청약통장 사용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변경된 주소지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사업주체로 서면통보(우편, 인터넷, 팩스)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신청자 및 당첨자는 주택형별로 제시된 공급금액에 대하여 모두 수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을 이유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고문은 변경 및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분양 홈페이지(https://www.elife.co.kr/)에 변경내용을 포함한 정정공고를 청약접수일 전에 공지할 예정이오니, 신청자들은 청약신청 시 변경 및 수정사항을 숙지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해당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공급신청서를 발급받아 당첨일 이전에 타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되었을 경우 본 주택의 당첨이 취소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자 자격 및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청약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주택전시관 등을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사 또는 당사 기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주택을 비교하여 주택전시관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타인 명의로 가입, 타인의 입주자저축을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됩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당첨 후 반드시 설계도서 등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홍보물 관련 유의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분양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택전시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등의 예정사항은 개발계획의 변경,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련사항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자료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에서 직접 확인 바라며, 계약체결 전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 및 단지모형 등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그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및 보행동선, 단지내조경, 커뮤니티센터,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각종 시설물, 쓰레기분리수거장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는 무관합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분양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 모형(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CG, 단지구획선 등) 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을 위하여 제작한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합니다.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당사와는 무관하며, 해당 사업주체, 국가기관, 지자체 및 기타 기관의 사업으로 추진 중 변경, 지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 바랍니다.

■ **교육 관련 유의사항**

-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원미초등학교이며, 해당 학생배정 정책 및 여건에 따라 통학구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학교 학교군은 '중동중학군·소명여자중공동학군'이며, 해당 중학군에 11개교가 있고 "부천시 중학교 신입생 무시험배정 지침"에 따라 배정될 예정이며, 향후 중학군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학교군은 평준화지역 단일학군(교육감 전형)으로 고등학교 배정시 학교와의 거리가 아닌 고등학교에 대한 학생의 선호도에 따라 선 복수지원 후 추첨배정 방식으로 관리하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중등교육지원과)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배치 시기 및 학교설립 여부는 공동주택 개발사업 진행상황, 분양률 및 입주시기, 학교신증설 교부금 예산확보 시기, 공사일정, 학생배치 여건, 학생배치계획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기획경영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학교배치(배정) 시기가 지연될 시 입주예정시기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별도의 통학편의(통학버스 운영 등)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거나 관할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이 필요치 않다고 심의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은 관련 법규 및 관할 관청인 보건복지부의 관련 규정과 지침(관련 가이드라인 및 연도별 보육사업 안내 등을 포함한다.), 관할 지자체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 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입주민(단지 내 세대와 임대주택 세대 입주민을 포함한다.) 자녀에게 어린이집 정원의 70% 까지 우선적으로 입소배정을 할 수 있고, 입주민 자녀 우선

- 입소 배정 이후 잔여 인원은 단지 외부에서 배정될 수 있으며, 개원 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이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어린이집 관리비는 향후 경기도 부천시(경기도 부천시에서 선정하는 위탁운영자(원장)를 포함한다.)에게 인건비, 승강기 유지비, 용역비 등 공용관리비를 제외한 “개별사용료”만 부과됩니다.
- 인·허가 및 설계관련 유의사항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의 제반 내용은 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작성 되었으며, 인·허가 승인조건 이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최종 준공 도면에 의하여 시공됩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외관 디자인(석재 종류, 석재 적용 부위, 석재 메지, 도장 줄눈, 도장 색상, 난간대, 캐노피 등)은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의 구조 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 변경, 통합, 사용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동 표시, 외부색채, 외관 및 옥탑디자인, 옥탑구조물, 지붕, 입면디자인(전후면 창호와 난간, 발코니 길이 및 높이 등), 조명시설, 담장, 안내시설물, 조경시설물, 동 출입구, 외부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조경 등은 설계 및 인·허가 조건 이행, 정비계획 시행지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관 인·허가에 따라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비상 차량 동선 등), 부대 복리시설(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 실외 어린이놀이터 등)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입주자는 이의 없이 동의하며, 입주자에게 변경사항에 대해 추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우리 단지는 분양 후 설계변경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설계변경관련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시 변경사항에 대한 동의서로 안내 예정입니다.
  - 주택전시관은 실제 공급주택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업계획인가 도서와 대조하여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전시관은 참고용으로 시공되었으며, 마감자재 및 설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사업승인 도서는 주택전시관 내 비치하였습니다.
  - 주택전시관과 홍보자료는 최종 시공 내용과 다를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계획
  - 공통사항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전실확장 등)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입주 후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공간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투시도 등 각 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외부 색채, 포장재, 식재, 시설물 등의 세부사항은 본 공사 시 상이할 수 있으며, 각종 심의 및 협의 등 인·허가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계약자는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 실 시공 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됩니다.
    -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삿짐 운반 도중 파손이 있을 경우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 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기타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 운영 및 하수도 사용료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도난이나 기물파손 및 범죄예방을 위한 단지 내 CCTV 설치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이행, 관련법령 개정,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은 공용관리비로 부과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는 굴토 후 지내력 검사 등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건축물의 외관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또는 비내력벽은 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옹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조건 이행, 사업주체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당사자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및 주변여건 관련 유의사항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황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외부는 도로의 높이 차이 및 단차가 있으니 계약 전 단지 내, 외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 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은 입주민에 의해서 유지 및 관리되며 일체의 비용은 입주민이 부담합니다.
    - 단지 주변의 개발 등으로 인해 입주 후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교통장애,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북측 소사1-1구역 재개발사업(약 626세대 계획) 및 남측 소사본1-1구역 재개발사업(약 1,728세대 계획) 진행중이므로, 향후 본 단지 입주시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및 주변여건 등으로 인해 근린생활시설과 부대복리시설 출입구, 근린생활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의 창호, 주차 램프 출입구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의 입면 디자인 및 레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 종교시설(소사성당) 위치, 단지 남측 철로 및 옹벽 위치로 조망권, 일조권, 소음, 진동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단지 주변현황을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없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현황으로 동측은 25~30m도로, 서측은 25~30m도로, 남측은 15~20m도로, 북측은 20~25m도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실시계획인가, 교통영향평가 변경 등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동측 직선거리 2.5km이내 서울 온수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여 대기질 영향 및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으로 조합 기부채납시설인 어린이공원 및 주차장이 계획되어있어 이로 인한 단지 주변 교통 혼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으로 1호선 지상철 철도가 단지 보다 3~4M높은 레벨에 있고 단지 주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인근에 계획되어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 간에 레벨 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단차 부위는 사면처리 또는 옹벽, 조경석, 산석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의 개발 등으로 인해 입주 후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 통행교통장애,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주변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도로의 방음벽 미설치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하며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2개의 단지로 계획되었으며 경비실은 단지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에 위치합니다. (2개소)
- 동·호수별 조망권은 주변 개발 행위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램프 위치로 인해 저층부 세대는 소음, 야간 빛공해로 인해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을 분양 카달로그나 모형을 통해 인지하여야 합니다.
- 단지외 외부 도로 사이의 경계는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단지 차별화 계획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소방시설은 소방법에 근거하여 시스템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시설물의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등)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 인입용 한전패드(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용)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지자체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경계내 보도 포장구간 및 조경(옥상조경 포함) 및 조경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등의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향후 경관조명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일부 세대는 경관조명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 및 정압기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지자체 및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하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통신 등 각종 인입계획은 인허가 조건 이행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 수거, 쓰레기는 단지 내 별도의 수거시설을 사용하며, 차량을 통해 수거 예정입니다.
- 단지외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 등은 인허가 협의에 따라 일부 지형 단차구간에 생울타리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 102~104동, 201동, 301동 북측에는 단지 단차레벨과 데크층을 연결하는 외부계단 또는 엘리베이터 동선이 계획되어 있어서 주민들 출입으로 인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분양 이후 어린이집, 시니어라운지(경로당) 등은 운영주체에 따라 평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위치 및 통행 동선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층에 부대복리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등)이 계획되어 있는 상부세대는 소음 및 진동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근린생활시설 등의 구성 및 건축계획은 인·허가 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2, 103동 주변 지하주차장내 1개소 및 201, 202동 주변 지하주차장내 계획된 계단실은 비상 소방시 활용되는 계단으로 노약자 및 장애인 이동편의 요구시에는 각동 ELEV 및 커뮤니티시설 전용 ELEV를 이용하여야 함을 인지 바랍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의 배치도상에 표현된 일부D/A, 제연팬룸은 건물에 매립 및 인접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센터,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소) 등)이 인접한 동은 실외기 등의 설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에는 해당시설에 필요한 실외기실로 인해 인접한 세대 미관 저해, 소음, 진동 피해,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형 및 주택전시관내 비치된 인허가도서의 계획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102, 103, 203, 204동 부근 실외 주민운동시설, 105~107동 사이 지하1층에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라운지카페, 키즈라운지, 올데이다이닝, 사우나, 경로당, 관리사무소 등)과 201, 202, 203, 301동 1층 주민공동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올데이다이닝, 게스트하우스), 102동 앞, 203동 배면에 어린이집, 102, 103동 인근에는 드포엠카페, 202, 301동 수경시설 등, 201, 202동 배면에는 지하1, 지상1층 2개 층의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개인오피스, 사우나, 골프연습장 등)이 계획되어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동에서 이용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 102, 103동 203, 302동 인근에는 놀이터가 계획되어 소음 및 생활권이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6동과 107동사이, 201동과 202동사이에 전기실/발전기실이 계획되어 있어 동 인근 지상층에 D/A가 계획되어있으며, 정기적인 장비의 운용 검사에 따라 연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에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사생활권, 소음, 진동, 빛공해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길 바라며,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특히, 101동 하부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되어있고, 301동 하부에 판매시설이 계획되어있어 소음 및 진동, 냄새 등의 환경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301동 하부에 판매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판매시설의 지붕과 2층 세대의 바닥레벨과의 차이가 크게 없음을 확인 바라며, 슬라브 레벨차가 없다 해도 밖으로는 출입은 불가함을 확인 바랍니다.
- 단지 주변으로 기타 유해시설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체결 전 현장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 유의사항

- 청약 및 계약 전 (사이버)주택전시관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판상형 및 탑상형 구조가 혼합된 단지로서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지반층)에는 각종 배선, 배관, 옥외송수구함, 환, D/A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차로 및 비상차로 구간은 비상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량 주차구획선이 있으며 이곳에 입주민은 주차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단지 지상 차로는 비상차로로 소방차, 구급차를 위해 계획되었음을 참고 바랍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심의를 거쳐 설치되므로, 위치 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로 진입하는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홀은 주택전시관에 조성되어 있지 않으니 건축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은 사항으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상 자전거 보관소 등은 설치 위치 및 개소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조, 통풍, 채광, 조망은 동별, 층별, 세대별로 차이가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층 PIT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용 급/배기구와 같은 설비 환기구가 일부 저층 세대와 인접 또는 연접되어 있으며 해당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구조물,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조망 등과 같은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진출입로와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차량전조등 및 출차경보음 등에 의한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CG 및 설계도서 등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이 1층에 설치되어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고, 분리수거함의 위치 및 규모, 개소는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과 수거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용 재활용 쓰레기 보관소는 각 동 인근에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보관소는 근생용 주차장 101동 인근에 1개소, 판매시설용 쓰레기보관소는 301동 인근에 1개소 설치됩니다. 이로 인한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분진, 냄새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쓰레기보관소의 위치 및 수량은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입주민은 이에 대하여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 공공장소인 어린이 놀이터, 필로티, 설비환기구(D/A), 발전기실 및 환기구(D/A), 전기실, 쓰레기 보관소, 엘리베이터(주동 및 외부),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라운지카페, 태양광패널(예정), 옥상 배기구, 웨더스테이션, 보안등 및 조경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빗공해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한 101동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옥상 실외기 계획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 등이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 옥외안테나 옥상층 101동, 105동, 106동, 107동, 204동, 301동, 302동 및 중계 장치 옥상층 101동, 105동, 106동, 107동, 204동, 301동, 302동, 지하 2층 동통신기기실(101동, 103동, 106동), PIT층(201동, 301동) 내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시공사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등)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 또는 피뢰도선이 설치되며, 일부동 및 일부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뢰용 피뢰침이 시공됩니다. 피뢰침에 의한 진동, 소음에 따른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상부로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 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 설비 및 환기용 구조물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용 구조물과 지하주차장 램프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량동선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분리수거대의 위치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분리수거대의 위치 및 규모, 개소는 동별 이용자의 편리성과 수거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상, 하차 시 차량 및 신호수의 육성에 의한 소음 등이 발생하며,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주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사, 비상차량 및 보행자 전용 출입구이며, 주차장 출입구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특성상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분산 배치되어 실외기실이 주동출입구 및 보행자 통로에 인접하여 설치되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부의 바닥 레벨은 공사 중 현장 여건에 따라 레벨, 조경 및 토목 계획(식재, 보도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 2에 따라 한국전파진흥협회(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계획은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근린생활시설 등의 구성 및 건축계획은 인허가 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아래쪽에는 아파트 오수펌프장이 매립 시공되어, 접근 보행로 통행시 점검구 및 배기구를 통해 악취 및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오수관로 일부 배출시에는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해 오수펌프를 통하여 배수 후 메인 배수관에 연결될 수 있으며 배수펌프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사 중 경비실 및 진입차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지반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부대복리시설 등의 층고, 지하 주차장레벨, 램프의 위치, 옹벽의 형태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에 따른 동간거리로 인한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 및 인접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분양홍보물 및 단지배치도 등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104동 201동 주출입구 인근과 1단지(3-1BL) 부출입구에는 통학차량 정차를 위한 Drop off-zone과 키즈스테이션이 설치예정이오니 분양홍보물 및 단지배치도에서 위치 확인바랍니다.
- 단지 내·외에 레벨차가 있는 구간에는 자연석 쌓기, 비탈면, 옹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인접한 세대는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지상철인 1호선 소사역과 차량이 많은 교차로와 인접하게 계획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으로 현재 301동 전면에는 방음벽 설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101, 105,106, 107동은 소음 보고서 상 법적 소음기준(65db) 이하이나 향후 골조공사 7층 타설 시점에 실제 소음 측정결과가 법적 허용치(65db)를 초과할 경우 전면에 방음벽이 추가 설치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별 유의사항
- 대지 인접 도로 또는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전체 동과 301동, 302동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이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동 저층부 입면 특화를 위하여 외부 창호 주변에 돌출장식물, 물딩 등이 설치되어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세대의 평면도, 입면도 및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태양광 설비는 본 공사 시 수량, 위치, 규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태양광 집광판에 의해 세대 내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창문에서 태양광 집광판 및 관련 설비가 보일 수 있으며 경관 침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동 배치 및 일조량에 따라 일부 동 혹은 전체 동에 분산 설치되며, 구조물에 의해 설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발전에 의한 전기는 공용부 전기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태양광 위치는 공동주택 지붕에 설치 예정이며, 시공 및 인허가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태양광 시설은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인에 의해서 유지 및 관리되며, 일체의 비용은 입주인이 부담합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는 동과 층이 있으며, 채광·환기창의 설치 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이용하는 세대수에 따라 일부 승강기 운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레벨차에 의해 각 동별 출입구 레벨이 상이함을 인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및 E/V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위치 및 사용상의 여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 또는 계단실 등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단지내 각 동 필로티 및 진입로 부위에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어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위치한 동은 소음이 있을 수 있으며, 위치 및 형태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외벽 마감은 저층부는 석재, 그 외 구간은 수성페인트 도로로 시공되며, 향후 석재마감 범위, 석재 종류, 줄눈, 색채 계획은 인허가 및 시공 여건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위치 및 통행 동선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동 출입구는 각 동호별로 천장 높이 마감재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변에는 지하주차장, 제연팬룸, 지하 시설용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미세한 진동 및 기류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층에 부대복리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등)이 계획되어 있는 상부세대는 소음 및 진동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 공용부 마감재 안쪽(천장, 벽체)에는 전기, 통신, 소방 시설물을 위한 가용성 금속 외장케이블 및 기타 부속품들이 노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제어반(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제어반 작동 및 엘리베이터 운행에 따른 진동 및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 또는 동파방지장치가 설치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부 전기료에 포함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민원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 주변에는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상가, 승강기, 계단실, 옥상구조물, 옹벽, 방음벽 등)이 설치되어, 인접한 주동은 소음, 진동 등에 의한 환경권, 사생활권 침해, 구조물에 의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상가)이 101동 하부에 1개층(층수는 지하)으로 계획되어 이로 인한 냄새, 소음, 진동 등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 1층에 계획되어있는 부대복리시설 지붕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다리가 계획될 수 있으며, 이는 청소 또는 관리자의 유지관리 동선으로만 사용됨을 확인 바랍니다
- 단지 주,부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에는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 차단기가 설치되어 진출입 차량 소음 및 차량 경보기 소음 등으로 인접세대 미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로티가 설치된 동에는 필로티 내 자전거보관대 등의 시설 이용과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 지붕, 측면에 의장용 구조물, 공청 및 위성안테나, 웨더스테이션용 안테나, 피뢰침, 이동통신 설비등의 시설물, 경관조명설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소음기준이 적용되며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 웨더스테이션(기상측정장비)은 104동, 201동에 설치되며, 웨더스테이션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웨더스테이션에 의한 진동, 소음, 전자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TV 안테나 설치 위치는 106과 204동에 설치되며, TV 안테나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하고 TV 안테나의 의한 진동, 소음, 전자파 등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외벽 및 세대 간 벽 등 단열설치부위의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 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 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물 외부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발코니, 지붕 등에 장식용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에 적용된 외관특화, 입면, 색채, 조명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 연결송수구가 동 전면 또는 후면에 설치 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일부 위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별 외벽에 환기 장치 및 세대 화장실 직배기관련 외부마감캡 설치가 되며 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전기, 설비공사상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일부동의 ELEV.홀 내부의 EPS/TPS, PD/AV실의 위치는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동 지상1층 일부 코아는 배치구조상 배면부 동출입구 진입동선 형성으로 인하여 출입구 너비가 협소하며, 이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을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엘리베이터홀 및 계단실 내 창 크기는 주동 및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각동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필로티 위층 및 최상층세대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전유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공용부분을 임의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동별로 저층부 부대시설 계획으로 동일한 층이라도 배치되는 세대의 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최상층 및 층 차이 부분 옥상공간은 공용공간으로, 유지, 보수를 위해 세대내 진출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유지 및 보수방식은 입주자회의로 결정에 따릅니다.
- 필로티 내부 및 주동 출입구에 환기용(제연용) 그릴창이 설치되어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조경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부 침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위치와 놀이시설물은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위치나 규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D/A(설비 환기구)의 노출이 있어, 통행로 등의 사람이 유입되는 공간에 인접한 경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조경 식재(수종 및 배식) 및 시설물(어린이놀이터, 휴게시설, 외부 주민운동시설 등)과 관련된 사항은 팜플릿 등 의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키즈스테이션 및 외부휴게시설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에 인접한 유아 놀이터는 어린이집 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입주자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쓰레기분리수거장의 경우 11개 계획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분리수거장이 1개소, 판매시설용 쓰레기분리수거장이 1개소 계획되어 단지 내 총 13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 각 동 출입구에서 쓰레기분리수거장까지의 거리는 동별 상이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분양 시 표현된 위치와 규격에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분리수거장으로 인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분진, 냄새 등의 생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부분에 대한 마감 처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분양 시 표현된 마감에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지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파고라와 키즈스테이션에는 별도의 냉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동 주변으로 소방을 위한 공기안전매트구역이 설정되는 경우 해당 구역에 교목 및 관목이 식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03동 북측에 휴게정원, 102, 103, 202, 301동 남측에 수경시설을 포함한 휴게시설, 102동 북측, 203, 204동 남측에 주민운동시설, 102동 남측, 104동 북측, 302동 북측에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수경시설에 수질정화설비를 반영할 예정이나, 이는 절대적으로 양호한 수질상태를 보장하지 않으며, 수질은 담수기간, 이용횟수 등 운영 및 관리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경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정기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는 단지경계 출입 제한을 위한 헬스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수목식재, 생활폐기물보관소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위치, 규모, 내부계획 등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유시설 유의사항

- 단지 지하주차장에는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며(지하1층, 지하2층), 각 주동 공용홀로부터 접근 및 이용(전기 자동차외 주차금지 등)의 형평성이 맞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 저수조, 배수조 및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은 현장여건에 의한 경미한 건축허가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동지하, 지하주차장, 펌프실, 전기실 등) 벽체 및 천장 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진입 높이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만족하며 유효 높이 이상의 차량에 의한 훼손은 하자책임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무인택배보관소는 1단지(3-1BL) 지하2층, 2단지(3-2,3-3BL) 지하1층 무인택배보관소실이 2개소씩 계획되어있으며, 특정 호수에 서의 거리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추후 현장여건에 따라 지하 주동 출입구 인근으로 변경될 수도 있으며, 이 역시 특정 호수에서의 거리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은 도서 상의 실선을 기준으로 구획되어 있고, 주차구획선 표기 시 좌우측 부분에 편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법적 소방 시설인 옥내소화전과 일부 주차면이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 급배기용 환과 주차면이 간섭되어 바람에 의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케이블트레이 설치 계획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린생활시설의 케이블트레이의 일부분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노출되어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은 1단지(3-1BL)는 지하2~3층, 2단지(3-2,3-3BL)는 지하1~3층으로 구성 (공동주택 2,155대), 근린생활시설은 101동 인근 (지상10대), 판매시설 301, 302동사이 (지상31대) 되어 있습니다. 1단지(3-1BL) 지하2층 램프 주변, 2단지(3-2,3-3BL) 지하1층 램프 주변으로 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이 계획되었으며 설치 위치, TYPE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주차장의 차단기는 별도로 계획되어있진 않으며,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이용자들이 단지 내 동선을 이용할수 있어 이로 인한 생활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주차구역은 상가 계약자가 이용하는 구역으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결정합니다.
- 아파트 주차장은 각 문주 앞에 차단기가 설치됩니다.
- 101, 105, 106, 107, 201동 주변에는 펌프실/저수조/전기실/발전기실이 설치되어 미세한 진동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101, 301동 지하주변에서는 근린생활시설용 소화저수조 및 전기실, 발전기실이, 101, 106, 201동 지하층 주변에는 빗물이용시설 펌프실 및 관리층이 설치되어 냄새 및 미세한 진동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101동,106동 지하1층, 지하2층 동주변에는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지상1층 및 지상2층에 돌출구조물의 D/A가 설치되고, 작동시 저층세대에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단지(3-1BL) 지하1층 데크면에 부대시설 계획되어있으나, 105~107동은 지하1층으로 바로 접근은 불가함을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부력방지 공법을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됨에 따라 배수펌프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되며, 지자체 요구로 인해 준공 이후 추가요금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부속동 및 일부 공용부에는 입주 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 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준공 및 입주 후 일정기간까지 AS업무를 위한 사무실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세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근의 동은 지하주차장 램프 차량 진출입에 따른 경고음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정전 등 비상상황, 주기적 유지관리 또는 아파트 관리주체의 필요에 의해 비상용 발전기가 가동될 시 106동, 107동 인근과 201동 인근 D/A를 통해 매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발전기 점검을 위해 106, 107동 사이와 201동 주변 D/A를 통해 매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신 후 계약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하층에 설치된 세대창고는 각 세대별 사용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운영방식은 입주 후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결정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각 동 지하의 세대창고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덕트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시공사인 DL이앤씨 특허 기술이 반영된 무량판 구조와 PC구조(벽식 T프레임 구조)가 같이 계획하여 구조심의를 득하여 설계되어 있으며, 2가지 구조형태는 다른 형태로 시공되며, 무량판 구조와 PC구조의 마감은 다르게 마감됩니다.
- 동별 지하 최하층 엘리베이터 홀에는 제습기가 설치 예정입니다.
- 지하 주차장 주차구획 배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 세대에 주차 후 이동 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용 시설물의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구역은 기본 일반, 확장, 경차,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설치되나, 현장여건에 따라 상세비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단지(3-1BL)의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이 주민공동시설로 계획되어있으며, 지하2,3층에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택배차량은 지하2층으로만 통행이 가능하여 차량통행로의 높이는 2.7m 이고 그 외 층은 2.3m 주차공간은 2.1m로 계획되었으며, 2단지(3-2,3-3BL)는 지하1~3층으로 지하1층만 택배차량 통행이 가능하며 높이 기준은 1단지(3-1BL)와 동일합니다.
- 동일주택형의 경우라도 지하 출입구와 지하 엘리베이터 홀의 형태는 동별, 호수별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기 바랍니다.
- 현장여건에 따라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 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 영구배수 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에 의한 과태료 부과/민원(각종 분쟁 등)은 당사와 관련이 없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용부 시스템(홀네트워크, 주차유도, 원격검침, 커뮤니티 예약 외)은 e편한세상 스마트홈 서비스에 최적화 설계되어있으므로, 사전협의 없는 변경 및 추가행위는 정상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 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에는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장 상부 데크층으로 바로 올라올 수 있는 소방 피난용 직통계단이 각 단지 별 1개소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내부는 환기를 위해 설치되는 급배기 루버 설치로 소음 및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특성상 지하주차장은 구획별로 주거동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은 전동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하며, 엘리베이터 및 계단 위치 단지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동별 지하주차장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의해 지하 빗물저수조가 계획되었으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제연 헬륨, 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 여건에 따라 PC 또는 RC,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 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팬룸 및 기전실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기계 가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사성당과 인접해 있는 도로의 레벨 변경으로 1단지(3-1BL)의 부출입구레벨이 외부 도로레벨보다 낮아 우수의 유입이 단지 내부로 흘러들어올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시기 바라며, 인허가에 문제없게 계획되었으며 이로 인한 문제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1단지(3-1BL)의 105~107동은 주출입구보다 높은 레벨에 1층이 계획되어있어 105동 옆의 경사로나 주민공동시설 부분의 외부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출입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지의 여건을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의 교통시설물은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후 소음평가 결과에 따라 105~107동, 101동 앞에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되지 않을 시에는 법적 기준에 만족하는 범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관련 유의사항

- 1단지(3-1BL) 지하1층 데크면에 계획된 부대시설 및 1층 어린이집 등의 실외기실 계획으로 입주자의 이동동선에 간섭이 있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301동 하부 판매시설계획으로 인해 301동 저층세대의 실외기 바람 간섭 또는 판매시설 지붕층과 단차가 크지 않아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실외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쓰레기보관소, 주민공동시설 등)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음, 냄새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각 실 크기, 위치 및 창호크기, 재질, 외부 마감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과 구조물이 일체화 되어 있는 동은 설비 공간의 일부가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고,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가 동 인근에 설치되어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 중 실외기 위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분양 이후 어린이집, 시니어라운지(경로당) 등은 운영주체에 따라 평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에 적용되는 공기청정형 냉·난방기의 경우 실별 시스템에 따라 일부 구간은 일반형 냉·난방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문주는 부대복리시설에 포함되며, 문주 설치를 위해 설계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센터(관리사무소), 시니어라운지(경로당), 어린이집은 기본 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102, 103, 203, 204동 부근 실외 주민운동시설이, 105~107동 사이 지하1층에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G.X룸, 골프연습장, 라운지카페, 키즈라운지, 올데이다이닝, 사우나, 경로당, 관리사무소 등)과 201, 202, 203, 301동 1층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경로당, 올데이다이닝, 게스트하우스), 102동 앞, 203동 배면에 어린이집, 102, 103동 인근에는 드포엠카페, 202, 301동 수경시설 등, 201, 202동 배면에는 지하1, 지상1층 2개층의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개인오피스, 사우나, 골프연습장 등)이 계획되어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동에서 이용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대시설 내 계획되어 있는 실외기실 설비의 가동으로 인하 소음 및 진동 등 운영에 따른 기타소음 등의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1층 부대시설 하부 지하2층에는 부대시설 이용을 위한 기계실 및 우수펌프실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단지 내부와 연결하는 불필요한 동선은 공사 중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1층 부대시설 내부에는 방화구획에따른 경계벽 및 방화유리문 등이 계획되어 있어, 추후 인테리어 공사 등의 사유로 변경시에는 지차체 기관의 적법한 변경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개선 및 본 시공 시 공사여건 등으로 인해 천장고 및 접근 구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설치 위치에 따라 각 동별로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 · 외부 바닥레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입구 및 내부 바닥 경사(슬로프)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내 · 외부 디자인과 창호사양 및 규격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평면 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부의 냉난방, 급수, 급탕, 전력, 조경용수, 동파방지열선, 제습기, 배수펌프, 환기 장치사용으로 공용 전기료, 수도료 등이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부대복리시설의 배수는 단지 내 레벨차로 인해 배수펌프를 통하여 배수 후 메인 배수관에 연결될 수 있으며 배수펌프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 선큰 구역에는 실외기실이 계획되어있어 그릴창이 설치되며 소음, 진동, 바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분양은 하나의 사업으로 인·허가를 득하였으며, 아파트 분양 및 계약 시에는 3-1BL은 1단지로, 3-2BL, 3-3BL은 2단지로 표기하였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운영 및 관리 방안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됩니다.
- 또한 각 단지별 커뮤니티 시설은 단지별로 적용된 규모, 시설물, 실 구성이 상이하오니 청약/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유의사항

- 상가 주출입구 레벨은 현장상황에 따라 계획 레벨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단 및 램프의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상가전용 주차장은 지상층 101동 인근에 구획되어져 있습니다. 판매시설의 전용 주차장은 301, 302동 사이 지상층에 구획되어져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의 출입구, 창호, 주차 램프 출입구 및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의 입면 디자인 및 레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아파트와 동선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용 주차장과 쓰레기 보관소가 계획되어 있어 101동 측면에 계획되어있는 램프 및 계단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며, 근생이용자들의 출입으로 생활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판매시설도 아파트와 직접 통하는 동선은 분리되어 있으며, 아파트 단지 내에 판매용 주차장과 쓰레기 보관소가 계획되어 있어 301동 측면에 계획된 램프 및 계단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며, 외부인의 출입으로 생활권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냉·난방용 실외기가 101과 인접한 근린생활시설 지붕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의 영향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위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판매시설의 냉·난방용 실외기가 301동과 판매시설 사이의 선큰 구간에 계획되어 있어 301동 저층세대의 소음 및 미세한 진동 등의 영향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1동 301동 인근에는 지상에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의 쓰레기 보관소가 배치되어 있어 저층세대는 이로 인한 악취 등의 영향에 의한 사생활 및 환경권이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옥상 난간 형태는 인허가 및 현장 시공 단계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간의 연결통로 사용시간은 보안문제 등의 사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단지 내에 설치될 수 있고, 각 동의 세대를 고려하여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용 각종 장비류로 인하여 인근 동에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은 대지 및 전면 도로의 경사도에 따라 호실별 출입문, 바닥면의 높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단차부의 위치 및 바닥면의 높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모형이나 설계에 명시되지 않은 우오수 맨홀이나 집수정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 이용차량을 위한 출입구 차단기는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을 이용하는 차량과 조업용 차량은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근린생활시설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 공통사항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바랍니다.
-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된 자재 중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나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단지 배치도 및 기타 분양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내부 구조(경량벽 포함)를 임의로 변경하여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를 인지하시고,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내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개별 설치 및 시공되는 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개별 입주자에게 있음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홍보물 등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 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내부구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서비스 면적입니다.
- 세대간 벽체에는 공사를 위한 작업통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작업 완료 후 조적 또는 건식벽체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동 별로 필로티의 위치가 다르므로 동일한 층이라도 배치되는 세대의 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시공되었으며, 층별, 세대별 실제 느끼는 소음과 진동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실외기실에는 인접세대로 피난를 위한 건축법상의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며, 하향식 피난구는 필로티 및 주민공동시설 설치 세대의 최하층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2층 이상의 세대 발코니에 인접세대 대피를 위해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됩니다. 단, 1개층 필로티 세대의 경우 3층 이상의 세대에만 설치되며 2개층 필로티 세대의 경우 3층 세대는 하향식 피난구 대신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 시 피난을 위한 사다리가 설치되며, 하향식 피난 사다리는 필로티 최하층(필로티가 하부에 있는 경우, 필로티의 상부층)을 제외한 전 세대에 설치됩니다. (동별 필로티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배치에 따라 하향식 피난구 설치 및 완강기 설치세대가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층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의 문틀이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비상시 사용을 위한 것으로 피난에 방해되는 물건 등을 적치 하여서는 안 되며,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실외기실 출입문을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과 방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사업 주체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 실외기 설치 공간 등)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전체 발코니가 연결 되어진 경우 각 실이 아닌 거실 혹은 주방 등 특정실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바닥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와 면한 발코니 벽체와 천장에 결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 폭과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공간 및 발코니 수전, 실외기실에 선홍통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절기 결로 낙수와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 등에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으며, 욕실은 마감여건 상 일부 구간에만 바닥난방이 시공됩니다.
-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슴기 사용, 장시간 음식물 조리, 실내 빨래 건조대 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건조기 사용 시 온·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방지를 위하여 환기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 (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슴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창호

- 본 공동주택은 개방성 확보 및 입면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외부 창호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창호의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 두께, 색상과 외장재 등은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 및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내·외부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개폐방향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으나 동 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 단위세대 주택형에 따라 창호의 크기 및 위치 방향, 마감자재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전시관을 필히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 방향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타입의 평면이라도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 및 외부창호 디테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 및 문짝의 폭, 높이,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평면 및 마감

- 본 공동주택 천장 높이는 2,300mm로 시공됩니다.
- 세대 내 거실, 복도, 침실 등의 벽체마감(마감두께 등)으로 인하여 본 아파트의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 등)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위세대 실별 가구의 실사이즈는 마감, 단열재 두께의 차이 등으로 도면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예 : 목재, 엔지니어스톤, 타일 등)는 자재의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하며, 시공 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고, 마감재 가공 및 생산방식에 따라 무늬,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시트류, 패넬류 등)는 자재 특성상 인접마감재와 일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고, 본 공사 시 나누기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 및 패넬형 마감재는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힘발생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주방상판 등 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 스톤의 이음매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도어에 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힘 방지 부속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가구 배면에 추가 부속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내 밥솥장은 인출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사용 시 반드시 인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출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 열기 및 수분 등에 의해 가구 마감재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불박이 가구(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스위치 등)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천정, 벽, 바닥 등의 내부 마감은 시공성 개선에 따라 실시공 시 마감 상세도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자재 내역은 주택 타입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목창호, 디자인월, 패넬형마감재, 가구판넬 등의 고정을 위해 본 공사 시 Staple Tacker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조건 이행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 등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액세서리 및 콘센트)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상부의 커텐박스는 천장 속 단열마감을 위하여 커텐박스의 폭, 깊이,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벽체는 마감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재료(콘크리트, 조적, 경량벽체), 길이 및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 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욕실 및 주방벽의 마감재는 제조사, 디자인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벽과 바닥의 마감재는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재의 점검구 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장 내부 수납치수 및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천장 몰딩의 재질, 규격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발코니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 (문 개폐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욕실 출입문은 본 공사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됩니다.
-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주택전시관,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다소 상이한 색상과 무늬의 자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내 천정몰딩은 하자예방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도배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문의 높이는 인테리어 계획의 사유로 건축허가 설계도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 및 문짝의 폭, 높이,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욕실도어에 손끼임방지 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상세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손끼임방지 장치는 도어면 외부로 돌출될 수 있으며 디자인, 소재, 색상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PVC 단열도어는 본 시공 시 동등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이질재 접합부의 코킹(실리콘)은 주택전시관과 동일하게 시공예정입니다.

■ 설비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비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일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재의 점검구 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설비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 및 복도에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천장에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됩니다.
-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및 커튼박스 크기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별 골조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청소용 수전,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용 세대 및 인접 세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결로 낙수와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정내부의 설비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발코니에 수전, 드레인이 설치 시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환기 장치로 인해 가동 시 각 실내 환기구를 통해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위치 및 수량은 성능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장비에는 외부 미세먼지를 일부 차단하는 청정필터가 설치되며, 필터는 연2회 이상 교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용하시는 정도에 따라 교체주기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슴가 사용, 장시간 음식물 조리, 실내 빨래 건조대 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또는 발코니에 건조기 사용 시 온·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방지를 위하여 환기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환기시스템의 설치위치에 따라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에 환기캡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천장에는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 장치의 위치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하향식 피난구 위치에 따라 세대 환기 장치 위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배기팬은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화장실의 배기팬은 천정 노출형 팬이 설치됩니다.
- 단위세대 주방 및 화장실의 배기 방식은 당해 층 직배기 방식으로 별도의 공동 배기덕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 벽체, 장식 커튼월 입면 또는 계단실 등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 주방 및 거실의 천장에 도시가스 법규에 따라 가스누출탐지를 위한 점검구 또는 누출 점검이 가능한 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가스계량기는 실내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배관의 세대내 원활한 인입 및 가스계량기 설치를 위해 다용도실의 천장고 및 마감면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전기쿡탑 선택 유무에 상관없이 가스배관 및 차단기는 기존 위치에 설치됩니다.
- 단위세대의 발코니에 설치되는 가스계량기는 실시설계 및 시공 시 그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의 발코니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되며, 발코니에 일부 가스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렌지후드 상부장은 수납 목적이 아닌 후드 장비 및 자동식 소화기 등이 설치되는 공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가 운전소음이 발생함에 따라 인접한 실내로 소음,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운전 시 반드시 실외기실 그릴을 개방해야 하며, 그릴을 닫고 운전하거나 그릴창 주변에 물건을 적치할 경우 성능 및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운전 시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소음 및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설치 시 별도의 실외기 고정대 및 에어가이드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설치 시 배관, 실내기 및 실외기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공사와 무관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본 아파트의 시공사에게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입주자가 별도로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기본으로 제공하는 냉매배관이 천장형으로 설치되어 스탠드형이나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가 불가합니다. (입주 후 스탠드형이나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를 원하는 경우 별도의 공사가 필요함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싱크볼 하부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됩니다.
- 주방가구 중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싱크배수관 등이 설치되므로 그에 따라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합니다.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악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공간 및 발코니 수전, 실외기실에 선홈통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양변기 인근 매립형 휴지걸이를 설치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는 노출형 휴지걸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싱크대의 수전 및 하수구 위치는 미러형 세대 미러하여 설치되지 않으며, 전세대 우측 기준으로 설치됩니다.
- 욕실 세면대 높이는 바닥 타일 기울기로 인해 일부 구간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현관, 비확장발코니, 욕조하부, 샤워부스, 현관팬트리 등에는 바닥난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에 개별보일러 및 세탁기/건조기가 설치되는 경우 개별보일러 점검 시 점검공간 확보를 위해 세탁기/건조기의 위치 이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 지역으로 세대별 보일러를 통한 난방 및 급탕공급하는 방식이 적용 됩니다.

■ 전기

- e편한세상 전용 앱을 통하여 세대 내 기기 제어(조명, 난방 등)가 가능하며, 월패드와 연결되는 세대기기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할 경우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마감재 내부(천장, 벽체)에는 전기, 통신, 소방 시설물을 위한 배관, 배선, 케이블 및 기타 부속품들이 일부 노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전자식스위치,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의 위치 및 수량은 단위세대 평형, 타입, 옵션, 아트월 위치 등에 따라 변경됩니다.
-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관련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노출 설치되며, 주택형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공된 단위세대 조명기구 공사 중 본 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등(자재단가)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관련제품, 세대 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의 경우, 본 시공 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마감재 및 가구 내부에 전기 설비 기구가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전기, 설비 공사상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조명 스위치와 월패드의 성능개선을 위해 구성 및 디자인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가구 부착형 콘센트의 수량 및 사양은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 제공되는 계약용량 및 분전설비 외에 계약자에 의해 증설되는 전기용량, 배관 및 배선 등은 직접 공사해야 합니다.
- 일부 콘센트는 2구 중 1구가 대기전력자동차단 콘센트로 설치되며, 의류관리기 등 고용량 가전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조명기구, 조명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환기디퓨저, 수전류, 바닥배수구 등의 제품 사양, 위치,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에 따라 배선기구/조명기구/스위치/분전함 등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되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 기기의 전화 통화 기능은 KT 일반전화 가입시 사용 가능하며, 인터넷 전화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방TV, 욕실 스피커폰, 전동빨래건조대 등 제공되지 않는 품목에 대하여 계약 후 임의로 추가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배관/배선 공사의 유형(매입, 노출)이 현장 여건 및 자재 수급 등의 사유로 위치별,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한국전기설비규정 등에 준수하여 시공됩니다.
- 콘센트나 스위치 등의 전기/통신 기기 직상부에 못을 박거나 드릴로 구멍을 뚫을 시 배선 손상으로 인하여 기기 동작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 관련 유의사항

■ 공통

- 주택전시관에는 59A, 74B 주택형의 확장세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주택형은 홈페이지 또는 주택전시관에서 제공하는 분양홍보물을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 전에 주택형별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비확장 부분 등 주택전시관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은 일정 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주택전시관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주택전시관 견본세대, 분양홍보물,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탑승위치 등)은 사업승인도서에 의하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공사여건 등으로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 분양 팸플릿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 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감재 및 견본세대 안내 영상홍보물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주택전시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및 분양홍보물 등에는 주택형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편의를 위하여 약식으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에 들어가는 단위세대 실명 및 세부 부속실 실명은 소비자의 효과적인 이해를 돕기위해 인허가 도서상의 실명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견본세대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세대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건축

- 주택전시관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상황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 견본세대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구는 실제 화재 시 피난을 위한 사다리가 설치되며, 하향식 피난구는 최하층을 제외한 전 세대에 설치됩니다. (동별 필로티 및 부대복리시설, 배치에 따라 최하층 세대가 2층 또는 3층인 경우가 있으며, 최하층이 3층인 경우만 완강기가 설치될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시공되는 건축법상의 하향식 피난구는 주택전시관 견본세대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구와 제품사양 및 힌지 방향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 및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아파트 계단창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D/A,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등은 설계 및 인-허가 조건 이행,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 홍보자료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인-허가 조건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외관 디자인(석재 종류, 석재 적용 부위, 석재 메지, 도장 줄눈, 도장 색상, 난간대, 캐노피 등)은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모형에 제작된 D/A 등 설비 시설물의 규모는 기계설비 작동을 위해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으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 및 주택전시관에 표현된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의 전시품(모형 등)에 제시된 저층부 필로티 등 입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도로계획 및 시설 등은 개발 예정인 사항을 포함한 사항들은 완공 예정년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당 사업지의 입주 시점과는 무관합니다. 대지경계선 외의 구간은 시공사의 시공분이 아니며, 대지경계선 범위를 벗어난 구간에 대하여 시공사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단지모형의 단지 주변의 도시계획(도로, 녹지, 산책로, 학교 등)과 도시기반시설(교통시설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정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주체의 개발계획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주변 녹지 및 학교 등과 연결되는 통로 및 보도 구간은 주변 현황 및 레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 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 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는 주택전시관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내·외부 창호는 본 공사 시 업체, 규격,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세대

- 주택전시관 세대 입구 디자인은 주택전시관용으로, 본 공사시 변경될 예정입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주택전시관, 홈페이지 상의 마감재리스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면과 상이할 경우 주택전시관을 우선으로 함)
- 주택전시관 건립 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건립 타입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세대 마감 코킹(실리콘)은, 본 공사시 품질확보를 위해 추가 및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그릴창의 크기, 재질, 색상, 디자인, 고정방법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PVC창호,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주택전시관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동등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주택전시관에 적용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시공된 제품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스타일러 등), 가구 등이 높이, 폭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내에는 공급금액에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건축허가도서에 따라 시공됩니다.
- 주택전시관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거실 실링팬,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 설비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기는 주택전시관용 전시용품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는 장비 사양 및 위치와는 무관하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저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도기류, 수전류, 욕조, 배수구, 온도조절기 등 설비 기구류들의 제조사,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각종 점검구의 사이즈, 위치 및 수량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본 공사시 가스배관의 위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본 공사시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됩니다.

#### ■ 전기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소방시설(화재 감지기, 유도등, 비상조명, 시각경보기 등)과 CCTV는 주택전시관용으로 본 공사와 무관합니다.
- 주택전시관 세대 내 설치된 월패드 및 스마트스위치의 기능은 참고용으로 현장별로 기준이 상이하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해당 기능은 구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입주 관련 유의사항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준공인가 이후 본 아파트의 내력벽체를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 하는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의 살수반경 기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홈페이지, 리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마감재 수준 향상이나 개인 선호도 반영을 원할 경우 잔금 완납 후 계약자 스스로 적법하게 인테리어 시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공사 중 폭염/한파, 전쟁,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정부정책이나 관계법령의 신설 및 개정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의 변경, 조기준공,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굴, 정부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의 사유에 따라 앞당겨지거나 지연되는 등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분양계약서 등에 따라 입주예정일이 통보된 경우 입주예정일의 변경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될 수 없으며,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인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 등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 공급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 도서를 기준합니다.
- “수분양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공사”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 담보책임의 종료절차를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별 하자보수보증서의 보증기간 내에 보수요청을 하지 않거나, “시공사” 등이 보수요청에 따라 보수를 완료한 경우, 위 연차별 하자보수 책임 및 하자보수보증 책임은 이행된 것으로 보며, “수분양자”는 하자보수 또는 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어 이에 반하여 “분양자”, “시공사” 등 에게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수분양자”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당해 건물의 제반 훼손부분은 “수분양자”에게 보수의무가 있습니다.

■ 기타

- 명칭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외부 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 법규변경,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 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 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기타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사용검사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 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르며, 분양신청자는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입주자모집공고,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 아이소, 세대VR, 모형, 사이버 주택전시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입주자모집공고 및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업 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의 경우 사업주체가 부도 또는 파산 시 등의 사유로 사업주체가 납부 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에서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 주택전시관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49번지

■ 분양문의 032-323-1649

■ 인터넷 홈페이지 <https://www.elife.co.kr>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 및 이 공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